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654-14

www.mohw.go.kr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장조사 사례집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알리는 말씀



이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의 주요 지적사례를 알기쉽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총 212개소의 현지 조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한 사례 중 지적 빈도가 높거나 소홀하기 쉬운 사례를 수집하였음

다만, 제도(법령, 지침 등) 변경, 시설 유형 별 개별사업지침, 지자체 별도 지침, 사례 발생 시점, 법인 및 시설의 당시 상황·여건 등에 따라 사안 별 처분 방향과 수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한 개별 사안들에 대한 조치 및 처분 시 이를 참조 하시되 **관련 법령·지침은 물론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실무 행정에 임하는 사회복지분야 관계 공무원 및 시설 운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목 차

I. 법인·시설운영

1.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10
2. 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미실시	13
3. 법인(3회계연도 평균 세입금액 30억원 이상) 감사인 선임 부적정	19
4. 법인 장기 차입금 허가 절차 미이행	22
5. 법인 수익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24
6.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28
7.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29
8.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31
9.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민법」 절차 미이행	33
10. 장애인거주시설(조리실) 설치 운영 기준 미준수	35
11. 시설장의 아동복지시설 무단 점유 및 아동 침실(거실) 정원 기준 미준수	36
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	38
13. 법인·이사회 구성 부적정	39
14. 법인 소유 공용차량 대표이사 사적 사용	40



II. 종사자 관리

1. 종사자 호봉 확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46
2.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보조금) 미반납	48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49
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51
5. 주무관청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겸직.....	53
6.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60세 초과) 미준수.....	55
7. 국외 출장자 근무상황부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57
8.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59
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61



Ⅲ. 회계관리

1. 시설 간 회계 구분 부적정.....	64
2.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법인 산하기관으로 무단 전출	67
3. 법인 및 시설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집행.....	69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주무관청 승인 없이 부적정 사용.....	71
5.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해지 환급금 미반납.....	72
6. 식자재(주·부식류 등)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74
7. 장기요양기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부적정	77
8. 시설 보조금으로 법인 사무국 등 공공요금 부당 납부.....	79
9. 시설 프로그램 수익금 운용 부적정	81
10.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83
11. 예산편성 시 세출목 편성 부적정	85
12. 시설운영비(보조금)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	86
13.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 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	89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품 구매 계약 관리 부적정.....	92
15. 시설운영비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94

Ⅳ. 후원금 관리

1. 바자회 수익금(비지정후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96
2. 지정후원금 모집 시 지정기탁서 징구 부적정.....	99
3. 비지정후원금 간접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등)로 부적정 사용	101
4. 후원금 운영 부적정.....	105

V. 기능보강사업

1. 2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110
2.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증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112
3.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114
4. 중요재산(체험홀) 승인없이 무단 용도 변경.....	117
5. 기능보강(개보수)사업비 목적 외 사용.....	119

VI. 참고서식.....	121
---------------	-----

VII.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크리스트.....	163
---------------------------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I

법인·시설 운영

1.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2. 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미실시
3. 법인(3회계연도 평균 세입금액 30억원 이상) 감사인 선임 부적정
 4. 법인 장기 차입금 허가 절차 미이행
 5. 법인 수익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6.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7.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8.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9.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민법」 절차 미이행
10. 장애인거주시설(조리실) 설치 운영 기준 미준수
11. 시설장의 아동복지시설 무단 점유 및 아동 침실(거실) 정원 기준 미준수
 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
 13. 법인·이사회 구성 부적정
14. 법인 소유 공용차량 대표이사 사적 사용

01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설립·운영에 있어 가장 근간(根幹)이 되는 규정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고, 정관 규정들 간에도 상충되지 않아야 함에도, 법인 「정관」 상 여러 조항들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관의 준칙)

•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정관」 상에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절한 「정관」 조항들에 대하여 제·개정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 상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표]와 같이 살펴보면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제1항에는 관련법령 조항 및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삭제해야 하며,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제2항은 「정관」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고, 「정관」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제3항에는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

참고



법인등기선례 제201709-1호(제정 2017. 9. 19.)에 따르면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3년이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표]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사례

연번	조문	규정 사항
1	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노인전문요양 시설, 노인의료사업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③ 결원으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사업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정관 작성 시 목적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과 수익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8호) 관련 조문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설립 0000.00.00.)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이전에 허가받은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운영 근거가 「정관」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고 제4조(사업의 종류)에 규정된 ‘노인의료 사업’에 근거함으로써 목적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인 「정관」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

보건복지부 복정65010-201(2000.06.0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보건복지부 복정65115-470(2001.10.04.)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

02 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미실시

사례요약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증받은 주식과 균청으로부터 기본재산 편입을 조건으로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회의, 수익사업, 정관변경사항 등)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따라야 함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

◎ 「민법」 제52조(변경등기)

- 민법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 변경등기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 원”에서 (주)★★★★로부터 기증받아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주식 00,000주(평가액 000,000,000원)를 「정관」에 등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등기하도록 조치하고,
- (시정)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가 ◎◎◎◎훈련장으로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 00,000,000원을 현금성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등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 등기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원”에서 0000년00월00일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주식기증에 따른 수증의 건을 의제로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하였고, 0000년00월00일 ◎◎군수(사회과, 사회 65115-****)로부터 [표 1]과 같이 기본재산 취득 허가를 득함에 따라 법인 정관 변경을 통하여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함에도 (주)★★★★ 보통주 00,000주(평가액 000,000천원, 주당 액면가 5천원)를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에 등재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표 1] 사회복지법인 □□□□원 기본재산 누락 현황

(단위: 원)

종류	취득일자	기증자		단가	주식수	평가액
주식	19**-*-**	(주)****	**시 **구 **동 ***-8 ***(****2-1)	주당 5천원 (보통 주식)	00,000주	000,000,000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인 **군 **면 **리 전 ***-2번지 토지(전, 0,000m²)가 ◎◎◎◎훈련장 으로 편입 됨에 따라 그 대가로 0000년00월00일에 ◎◎군수로부터 보상금 00,000,000원을 받은 후 동 보상금을 기본재산 취득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0000년 0월 0일 정관변경 인가(**군, ***지원과-***0)를 받았음에도, [표 2]와 같이 조사일 현재까지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등 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사회복지법인 □□□□원 보통재산 현황

(단위: 원)

종류	최종예치일자	예치은행	내용	평가액	취득근거
현금	2015-**-**	***-9841-***-13 (◎◎은행)	정기예탁 (현금)	00,000,000	**군 **면 **리 전 ***-2번지 기본재산 처분액(편입 보상금)

[유사사례 1] 법인 기본재산 취득보고 및 정관변경 미실시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표]와 같이 ○○○도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산하시설인 “◇◇◇원”의 건물을 2회(2015.12., 2016.08.)에 걸쳐 증축하면서 총 175.75㎡의 건물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주무관청인 ○○○도에 재산취득보고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정관의 기본재산 변경(면적 및 평가액 등)도 하지 않았다.

[표] 사회복지법인 □□□□ 산하시설 ◇◇◇원의 증축 건물 관리 현황

대상시설		건물 증축 내역				재산취득 보고		정관기본 재산변경	
시설명	소재지	증축 전 (A/㎡)	증축 후 (B/㎡)	증가면적 (C=B-A/㎡)	공부상 변동일	여	부	여	부
◇◇◇원	**** ** 리 1689- **	1층 592.82	1층 688.94	1층 96.12	'15.12.29.		○		○
		3층 429.84	3층 509.47	3층 79.63	'16.08.09.		○		○
계		1,847.57	2,023.32	175.75			2건		2건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산하시설인 “◇◇◇원”의 건물 증축 건에 대하여 법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취득보고 및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도록 조치하고,
- **(과태료)**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별표 4, 2-마]에 따라 기본재산 취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치

[유사사례 2] 법인 기본재산(처분잔액) 처리 절차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에서 법인채무 상환을 위하여 법인재산 중 토지 3필지[면적 1,805㎡, 평가가액 218,010,000원, ***시 **면 ***리 ***번지(전 795㎡), ***-*번지(전 415㎡), 산*번지(임야 595㎡)]에 대하여 2013.07.22.에 주무관청인 ***장에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고,
 - 2013.08.06.에 위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득하였으나, 당시 평가가액인 218,010,000원에 매각하지 못하자 5차례에 걸친 입찰을 통하여 2013.11.07.과 2014.01.15.에 걸쳐 174,408,000원에 매각을 하였다.
 - 이후 □□고등법원에서 화해 조정된 채권자 ○○○에 대한 채무액 158,000,000원을 변제한 잔액 16,408,000원 (174,408,000원-158,000,000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일(2017.03.24.) 현재까지 기본재산 편입 및 정관변경 인가를 하지 않았다.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기본재산인 토지 3필지 [면적 1,805㎡의 매각대금 (174,408,000원)의 채무 변제 후 잔액 16,408,000원에 대하여 기본재산 편입 및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도록 조치

[유사사례 3] 법인 기본재산 관리 소홀

- “사회복지법인 □□□□”은 2007.08.28. ◎◎시청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 대표이사 소유의 ◎◎시 ◇구 □□동 266번지 대지 585㎡를 2007. 08. 30. “□□□□재단”에 증여 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으며, 이후 위 법인에서는 2013.11.15. ◎◎시 ◇구 □□동 2**번지(585㎡)와 2**-1(1,120㎡) 대지 위에 지상 4층 연면적 1,589.62㎡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아 완공하였다.
 - 따라서, ◎◎시 ◇구 □□동 2**번지에 위치한 대지 585㎡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법인의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보통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지 585㎡를 기본재산으로 편입 하도록 조치

[유사사례 4] 법인 기본재산 관리 소홀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표]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 ★구 ★★동 51 대지 80㎡ 등 총 7건의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정관(2014.08.13. 개정/조사 당일 최종 정관) 상 기본재산 현황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 아울러, 위 법인에서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2016.11.07. 발행)’ 자료를 보면 위 등기 상 자산의 총액이 202,522,95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 위 법인의 정관(2014.08.13. 개정) 상 기본재산의 총평가액이 8,329,020,67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11.11. 조사일 현재까지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사회복지법인 □□□□ 정관 기본재산 등재 누락 현황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평가액(원)	등기일	취득일
〈취득보고 이행: 2건〉						
1	대지	**구 **동 **	80	-	'16.03.14.	'15.09.21.
2	건물	**구 **동 ***-*** **아파트 제*** 동 제*층 제***호	59.31	122,000,000	'15.12.18.	'15.12.18.
소 계		2 건		122,000,000		
〈취득보고 미이행: 5건〉						
1	토지(답)	**시 *구 **동 **-***	101	45,672,200	'14.08.27.	'14.08.21.
~ 종략 ~						
소 계		5 건		410,341,140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5건의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별표 4, 2-마]에 따라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재산 취득 7건에 대하여 「정관」 상에 기본재산 등재 및 법인의 등기사항 중의 하나인 자산의 총액 변경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도록 조치

03 법인(3회계연도 평균 세입금액 30억원 이상) 감사인 선임 부적정

사례요약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 상 세입 평균금액이 30억원 이상(법인 및 산하시설 합산 금액)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에 선임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 법 제18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감사 2명 중 1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적격자를 ◇◇◇시장(○○○도지사 사무위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감사를 재선임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13년의 경우 2013.04.17.에 ◇◇◇시장(○○○도지사 사무 위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13.05.26.에 □□□을 감사로 선임하였으나,
- 위 감사 □□□의 임기가 만료(2015.05.25.)될 시기가 다가오자 2015.03.23.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임하기로 결정한 후 2015.04.02.에 ◇◇◇시장에게 연임 보고를 하였는바,
 - 이때 법인의 [표]와 같이 직전 3회계연도(2012년 ~ 2014년)의 세입결산 평균이 8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채 자체적으로 감사를 선임하였다.

[표] 법인 및 시설의 직전 3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A)	2013년 (B)	2014년 (C)	3회계연도 세입결산		2015년 (참고)
				계 (D=A+B+C)	평균액 (D/3)	
소 계	8,829,994	8,758,953	8,294,865	25,883,812	8,627,937	9,913,746
법인 *****	361,162	317,008	241,681	919,851	306,617	737,929
***원	1,284,981	1,453,289	1,458,228	4,196,498	1,398,833	1,663,160
****원	1,288,863	1,378,547	1,237,799	3,905,209	1,301,736	1,169,934
*****원	1,600,336	1,663,384	1,337,583	4,601,303	1,533,767	1,516,447
*****원	905,513	1,018,605	1,106,794	3,030,912	1,010,304	1,162,743
****원	1,427,377	839,109	971,717	3,238,203	1,079,401	1,382,013
****	910,064	883,712	775,715	2,569,491	856,497	894,858
****	418,905	424,460	452,197	1,295,562	431,854	534,437
****	171,218	320,343	220,860	712,421	237,474	225,437
*****	312,166	289,320	338,541	940,027	313,342	465,859
****	149,409	171,176	153,750	474,335	158,112	160,929

[유사사례] 법인 감사 선임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에서 2015. 12월에 임기(2013.12.20. ~ 2015.12.19.)가 만료된 감사 ○○○(회계사)을 선임할 당시 [표]와 같이 위 법인의 직전 3회계연도(2012년 ~ 2014년)의 세입결산서에 세입의 평균이 44억원임에도 ◇◇◇시장(○○○도지사 사무위임)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채 자체적으로 감사를 선임하고, 2015. 12. 23.에 주무관청인 ◇◇◇시장에게 임면 보고하였다.

[표] 법인 및 시설의 직전 3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A)	2013년 (B)	2014년 (C)	3회계연도 세입결산		2015년 (참고)
				계 (D=A+B+C)	평균액 (D/3)	
소 계	5,550,000	3,833,000	3,825,000	13,208,000	4,403,000	4,134,000
***	2,196,000	295,000	57,000	2,548,000	849,000	45,000
***	2,192,000	2,365,000	2,576,000	7,133,000	2,378,000	2,809,000
***	1,162,000	1,173,000	1,192,000	3,527,000	1,176,000	1,280,000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감사 2명 중 1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적격자를 ◇◇◇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사로 재선임 하도록 조치

04 법인 장기 차입금 허가 절차 미이행

사례요약



법인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부당하게 장기 차입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려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함

처분내용

- (주의) “사회복지법인 □□□□”에서 장기 차입 시 시·도지사의 허가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 할 경우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철저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에서 2013년 1월 정관 상 기본재산이 347,357,500원이었고 이에 대한 100분의 5인 17,367,875원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차입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220,101,690원을 차입하고, 위 기간 중 8,000,000원을 상환하여 총 차입금이 212,101,690원에 이를 때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차입하였다.

[표] 장기 차입금 내역

(단위 : 원)

연번	적요	차입 내역		차입누계	반환내역		사유
		차입일	금액		반환일	금액	
계			220,101,690			174,000,000	
1	***	2013.01.30.	59,000,000	59,000,000	2015.01.13.	59,000,000	농지부담금
2	***	2013.11.25.	37,000,000	96,000,000			태양광설치
3	***	2013.12.26.	4,000,000	100,000,000	2014.10.08.	4,000,000	공과금
4	***	2013.12.27.	4,000,000	104,000,000	2014.10.10.	4,000,000	전기감리
5	***	2014.01.06.	20,000,000	124,000,000	2015.01.27.	20,000,000	급여
6	***	2014.01.20.	10,000,000	134,000,000	2015.04.01.	22,000,000	건축감리
7	***	2014.01.20.	3,200,000	137,200,000			공과금
8	***	2014.01.20.	8,800,000	146,000,000			공과금
9	***	2014.01.29.	4,000,000	150,000,000	2015.04.02.	4,000,000	급여
10	***	2014.01.30.	4,000,000	154,000,000	2015.04.02. 2015.06.30.	1,000,000 3,000,000	급여
11	***	2014.02.11.	5,000,000	159,000,000	2015.06.30.	5,000,000	급여
12	***	2014.02.12.	5,000,000	164,000,000	2015.06.30. 2015.08.05.	2,000,000 3,000,000	급여
13	***	2014.03.05.	3,334,200	167,334,200	2015.08.05.	3,334,200	급여
14	***	2014.03.06.	7,500,000	174,834,200	2015.08.05.	7,500,000	급여
15	***	2014.03.20.	267,490	175,101,690	2015.08.05.	267,490	상하수도
16	***	2014.04.04.	5,000,000	180,101,690	2015.08.05.	5,000,000	급여
17	***	2014.04.08.	2,000,000	182,101,690	2015.08.05.	898,310	급여
18	***	2014.04.10.	4,000,000	186,101,690			급여
19	***	2014.05.24.	4,000,000	190,101,690			병원비
20	***	2014.11.07.	30,000,000	212,101,690	2015.12.02.	30,000,000	지열공사
		2016.05.12.		46,101,690			차입잔액

05 법인 수익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사례요약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회계 외 별도 수익사업회계를 두고 시설 입소자 및 방문자 등을 위한 매점을 법인이 직접 운영해야 함에도, 매점(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법인 산하 시설에서 매점을 운영·관리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함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시설인 “◇◇◇◇재활원”에서 운영 중인 매점을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등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법인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에서 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매점을 운영할 경우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법인 명의로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법인회계 외 별도의 수익사업회계를 두고 법인에서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매점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법인 산하시설인 “◇◇◇◇재활원”에서 [표]와 같이 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매점운영 인력의 인건비는 ◇◇◇◇재활원의 고유목적사업인 “화장지 생산 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부당하게 매점을 운영·관리하였다.

[표] ◇◇◇◇재활원 매점 운영 현황

(단위: 원)

기관명	연도	수입	지출	인건비
◇◇◇◇ 재활원	2016	58,269,991	45,952,511	18,762,000
	2017	52,267,246	43,867,138	19,370,927
	2018	63,947,303	33,082,703	23,306,550

[유사사례 1] 법인 수익사업(★★병원) 회계관리 미흡

- “사회복지법인 □□□□”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차량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생계비의 카드 사용 건에 대하여 건별 사전 품의 없이 카드 사용 후 월 1회 일괄 지출결의를 하고 있으며,
 - 생계비(주부식구입), 피복비, 의료비(◎◎의약품대금, △△의료기대금 등), 시설비(병원 보수비), 차량비(수리비, 유류비), 연료비(LPG가스대금), 수송비 및 수수료(환의세탁용역비, 의료폐기물, 복사기 소모품) 등의 대다수 지출에 있어 지출결의서를 제외하고는 지출증빙서류(거래명세서, 전자세금 계산서 등)가 누락되어 있고, 원무행정·행정부장(***), 업무추진비 지출 시 개인 카드로 사용한 후 현금 이체하는 등 46건 / 3,588,890원에 대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자금 집행을 불투명하게 관리하였다.
 -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자금원천이 보조금 또는 후원금일 경우 사용이 제한된 업종인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19건 / 1,265,000원을 카드 집행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법인 □□□□”의 수익사업(★★병원) 회계관리가 미흡하고 투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병원”의 지출증빙 누락, 운영비 개인 계좌 이체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하여 재조사를 진행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위반사항 발견 시 같은 법 제14조, 제19조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 요구

[유사사례 2]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시장(***지원과-26**5, 20** 4. 1*, 청소년**관-1**25, 201* * 19.)으로부터 정관변경 인가를 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2017.07.12.자로 구입한 ◇◇◇시 ◇◇로 7길 * 1**동 1**1호(★★동, **○용항@)에 대해서만 2017. 10월부터 수익사업을 이행하고, ◇◇◇시 ★★동 41-2(임야, 6,027㎡)번지 등 12건에 대해서는 조사일 현재까지 수익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시 ◇◇로 7길 8, 1**동 1**1호 (**동, **항)에 대해 [표]와 같이 2018. 01. 02.부로 임대 계약하였으나 실제 입주일이 2017. 10월로 인해 이때부터 매월 300천원의 수익이 있음에도 별도 수익사업회계를 두지 않고, 법인회계와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아울러,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법인 수익사업회계로 세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2017. 10월부터 2018. 2월까지 시설회계로 1,500천원을 세입처리 하였다.

[표] 사회복지법인 □□□□ ★★수입사업 현황

(단위: m², 천원)

구분	소재지	면적	임차인	계약기간			수입금 및 처리기간		
				시작일	만료일	월 임대료	계	2017.10. ~ 2018.02.	2018. 3. ~ 10.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로 7길 8. 1**동 1**1호 (**동, **항)	101.9887	***	2018. 01.02.	2020. 01.01.	300	3,900	1,500 시설회계	2,400 법인회계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시 ◇◇로 7길 8, 101동 101호(**동, ***)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시설회계로 처리된 1,500천원에 대해 법인 수익사업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

06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식품위생 교육·점검 등 관리·점검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위생관리, 보관식의 종류 및 방법, 영양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지적사례(상세)

- “□□□□ 법인” 및 산하시설 “◆◆◆◆”, “◎◎◎◎”, “★★★★”에서 제출한 ‘직원식당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위 법인 및 시설에서는 2014. 09월부터 2016. 10월 현재까지 1일 1회 119명이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해왔다.

처분내용

- (시정) “□□□□ 법인” 및 산하시설의 집단급식소 미신고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등의 조치 요구

07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에 힘써야 하나, 운영위원회 구성도 상당 시간 지연시켰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
 -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
 - *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지적사례(상세)

- “□□□□ 시설”에서는 2018.01.02. ◎◎◎군수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8.11.21.에서야 시설의 장을 비롯하여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12.01. 조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처분내용

- (시정) “□□□□ 시설”에서 시설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유사사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에 대한 시설운영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시설”에서 2017년 03월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총 9명으로, 위 위원 중 2006년 06월에 위촉한 위원 4명(***, **, **, ***)과 2008년 12월에 위촉한 위원 1명(***) 및 2009년 06월에 위촉한 위원 2명(***, ***)은 위촉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주무관청인 ★★시장의 재위촉 없이 계속 연임해 왔으며, 게다가 그 중 2명(***, ***)은 현 법인 이사로 특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시설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관리·운영하였다.

처분내용

□ (시정) “◇◇◇◇시설”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특수 관계자 2명(***, ***)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재위촉 없이 연임하고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재위촉을 받도록 조치

08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사례요약



정신요양시설 입소인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작성·관리토록 하고, 시설장(직원)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 금전관리 교육,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입소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 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입소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 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금전 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 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자의 금전 관리 지원 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입소자의 금전 지출 시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 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자의 금전 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

지적사례(상세)

- “○○○○○시설”에서는 입소자 145명의 금전 관리를 해오면서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금전 지출 시 영수증을 첨부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 또한,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자의 금전 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시설 입소자의 금전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처분내용

- (시정) “○○○○○시설”에서 입소자 개인 금전 관리 시 대리인을 지정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포함한 개인별 금전출납부 작성,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입소자 개인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유사사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소홀

- 「아동복지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를 보면,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최저 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결연, 후원금 및 개인 금전을 관리할 때에는 입소 아동의 후원금 통장 명의를 아동 개인 명의로 하되, 사용 인감은 시설 인감으로 하고, 카드발급이나 사용 인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아동 임의로 현금 과다지출을 방지하고, 특별히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를 받아 시설장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통장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 또한,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 가정 등으로부터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아동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설에서 위임하여 관리하되, 시설회계와 별도 관리가 원칙이며, 수입은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지출은 아동별 금전출납부를 기록·관리 [거래 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의류사진, 프로그램일지 및 출석부 등)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소소소소시설”에서는 입소 아동 *** 외 30명의 개인 금전을 금전출납부 및 지출 영수증 등의 기록·보관 없이 개인 명의 계좌로만 각각 관리해 오다가 2019. **. **. 입소 아동 동의 없이 ★★은행의 *** 외 30명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총 000,000,000원을 인출하여 “소소소소시설” 명의 계좌로 일괄 이체하였다.
 - 이에, 입소 아동별 ★★은행 잔액 증명서 상에 개인계좌 및 잔고는 없었으며 개인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된 입소 아동 개인 금전 총 000,000,000원을 “소소소소시설” 명의 ★★은행 잔액 증명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부당한 명의변경 이후에도 “소소소소시설”에서는 입소 아동 개인별 금전출납부 및 지출 영수증 등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개인 금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내용

- (시정) “소소소소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동의 없이 *** 외 30명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시설 명의 계좌로 인출한 000,000,000원을 입소 아동 30명의 각각의 개인계좌(사용인감은 시설인감 사용)로 반환 조치하고, 입소 아동 개인별 금전출납부 및 지출 영수증 등의 기록·보관 등 개인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

09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민법」 절차 미이행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의 장 등은 장례절차를 이행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무연고자 인적사항 공고 → ②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 ③ 상속인 수색 공고 → ④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⑤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함

○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있는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그 기간은 2월 이상임

○ 「민법」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그 기간은 1년 이상임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음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 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처분내용

- (시정)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2명의 유류금품 총 00,000,000원에 대하여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

10 장애인거주시설(조리실) 설치 운영 기준 미준수

사례요약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별도의 조리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사항을 갖추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적법하게 수리 되면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 중 조리실은 필수 구비 시설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적사례(상세)

- “★★★★시설”에서는 설립(19**.**.*) 당시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조리실(216㎡)을 갖추고 있었으나, 20**년도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생활관 3·4층 개보수) 당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위한다는 명목으로 조리실을 없애고 거주 공간으로 변경하였고, 동일건물 내의 다른 “○○○○ 시설”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처분내용

- (시정)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조리실을 갖추도록 조치하고,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

11 시설장의 아동복지시설 무단 점유 및 아동 침실(거실) 정원 기준 미준수

사례요약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거주 아동의 생활관(침실)을 점유·생활 및 침실 1개당 3명 이하로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법인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 [별표 2]의 '거실' 기준

-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서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처분내용

- (시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건물 내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장(○○○)을 즉시 퇴거 조치하고,
- (시정) 「아동복지법」 제5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침실 1개당 아동 정원 3명 이하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표]와 같이 생활관 8개소 중 아동이 거주하는 곳은 7개소인데 침실 1개 당 정원 3명 이하의 기준을 준수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소(3명 초과)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표] 생활관 침실별 아동 거주 현황

(단위: 명)

연번	생활관 구분	침실 수 (보육사방 제외)	아동 거주인원	침실 당 평균 아동 수	거주아동 취학현황	비고
계	8개	24	78			
1	401호	3	13	4.3	고 4, 중 4, 초 3, 미취학 2	
2	402호	3	11	3.6	미취학 11	
3	501호	3	13	4.3	고 4, 중 6, 초 3	
4	502호	3	9	3	고 3, 미취학 6	
5	601호	3	13	4.3	고 3, 중 5, 초 2, 미취학 3	
6	602호	3	10	3.3	미취학 10	
7	702호	3	9	3	미취학 9	
8	701호	3	0	0	-	시설장 무단 거주

-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당 시설의 장(대표이사 겸직)인 ○○○는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 현재 까지 7년 7개월 동안 “◇◇◇◇아동복지시설”의 건물 내 701호에서 무상임대로 거주하고 있는바, 이사회 의결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시설 거주아동이 사용해야 할 주거공간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인 대표이사로서 법인 재산(건물)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호대상인 입소아동이 쾌적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나 설비가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관련 법령을 위반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하였다.

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

사례요약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생성된 문서는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문서 송·수신 시 인권지킴이단장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고 필수 보고사항과 지원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 법 제60조의4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됨
-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함

* 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②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④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⑥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적사례(상세)

-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함에 있어, 인권지킴이단에서 생성된 문서의 인권지킴이단장 명의 미사용 등 독립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보고사항 누락 및 지원계획 미수립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내용

- (주의)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의 생성문서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고 분기별로 운영상황을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군·구는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13 법인·이사회 구성 부적정

사례요약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을 두되, 이사 정수가 7명인 경우 외부추천이사 2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 시·도지사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구성인원이 7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법인 이사회를 운영한 사례

관련규정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음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둬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결정족수)
 - 이사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짐
 -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음
 -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지적사례(상세)

- “□□□□재단”에서 법인 이사회를 개최할 때 이사회 재적이 00년00월00일. 5명, 00년00월00일. 5명, 00년00월00일. 6명, 00년.00월00일. 6명, 00년00월00일. 6명, 00년00월00일. 6명, 00년00월00일. 6명이었는바, 위 7회에 걸쳐 재적이사 구성이 7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의 및 의결을 하였다.

처분내용

- (시정) 법정 이사 정수를 위반한 채 7회에 걸쳐 이사회 개의 및 의결을 한 “□□□□재단”에 엄중 경고 조치하고, 위 7회 이사회 의결사항 중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재확인 하도록 하며,
- (시정) 7회에 걸쳐 이사회 의결 절차의 법적 하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임원 임면 등의 보고 수리, 예·결산안 보고 누락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주무관청(★★시)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 요구

14 법인 소유 공용차량 대표이사 사적 사용

사례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수년 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유지관리비 등을 법인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

관련규정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대표이사 ○○○가 법인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출한 유류비용 등 총 00,000,000원을 반납받아 법인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년부터 20**년 **월까지 [표 1]과 같이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제네시스와 맥스크루즈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표 1] 제네시스 및 맥스크루즈 차량내역

차명(번호)	소유자	등록일	차 종	용 도	배기량	승차정원
제네시스 (**구****)	사회복지법인 □□□□	20**.**.**. . ※ 20**.**.**. .매각	대형 승용	자가용	3,342cc	5명
맥스크루즈 (**거****)	사회복지법인 □□□□	20**.**.**. .	대형 승용	자가용	2,199cc	6명

- 20**. **. **. 조사 당시 법인 대표이사 ○○○은 위 2대 차량의 80%는 법인이나 시설을 위해 사용하였고 사적 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 조사결과, 20**. **. **. 조사 당시 대표이사 ○○○은 상기 2대 차량의 공적사용 부분에 대해 특별히 소명하지 못했고, 차량운행일지는 차량 구입시점부터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20**. **. **.에 확인 결과 스파크(**두 ****)와 카니발(**구 ****) 등은 차량운행일지가 있으나, 제네시스와 맥스크루즈의 차량 운행일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법인 산하 “◇◇◇시설” ○○○의 진술에 따르면, 위 2대 차량은 대표이사과 직원이 관외 및 시내출장 때 동반 탑승하여 이동하는 경우 이외에 직원이 단독으로 운행한 적이 없고 주로 대표이사가 운행하였다고 하였고,
- 이에 대하여 법인 산하 “◇◇◇시설” 등 4개 기관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위 2대 차량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20**년부터 20**년 **월까지 세미나 교육, 학술대회 참석 등 출장이나 시내이동 등 총 17회 정도 이용할 때 대부분 동반 탑승을 하였고 직원 단독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직원 활용 등 공용차량으로써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적합 2건(20%), 부적합 8건(80%)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20**.07.05. ○○○의 진술과 20**.07.26. 종사자 5명의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표 2] ◇◇◇시설 등 4개 기관 종사자(5명) 차량 이용상황 조사내역

차량번호	구 분		조 사 결 과					
			직원 A	직원 B	직원 C	직원 D	직원 E	소계
제네시스 (**구****)	출장 등 이용 (회)		15	1		1		17
	직원활용 등 공용차량 으로 적합성	적합						0
		비적합	1	1	1	1	1	5
맥스 크루즈 (**거****)	출장 등 이용 (회)		1			1		2
	직원활용 등 공용차량 으로 적합성	적합		1		1		2
		비적합	1		1		1	3
합 계	출장 등 이용 (회)		16	1		2		19
	직원활용 등 공용차량 으로 적합성	적합		1		1		2
		비적합	2	1	2	1	2	8

- 아울러, 대표이사 ○○○은 20**. *. **. 제네시스를 개인용으로 이용하다가 ◎◎도 ◇◇시 ★★동 △△ 휴게소 앞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20**. *. *)하였다.

[표 3] ▲▲ 주유소 거래장상 차량 주유자 주유내역

차량번호	주유자	주유 횟수				개인별 사용횟수	개별차량 사용비율	2대 차량 사용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네시스 (**구****)	대표이사	22	57	56	-	135	86.0%	69.9%
	***	1	1	2	-	4	2.5%	2.1%
	***	1	17	0	-	18	11.5%	9.3%
	소계	24	75	58	-	157	100%	(단위: 건수)
맥스 크루즈 (** 거****)	대표이사	-	-	2	30	32	88.9%	16.6%
	***	-	-	-	2	2	5.6%	1.0%
	***	-	-	-	1	1	2.8%	0.5%
	***	-	-	-	1	1	2.8%	0.5%
소계	-	-	2	34	36	100%		
총 계		24	75	60	34	193		100%

- 대표이사 *** 사용: 총 193회 중 167회(86.5%)



II

종사자 관리

1. 종사자 호봉 확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2.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보조금) 미반납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5. 주무관청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검직
6.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60세 초과) 미준수
7. 국외 출장자 근무상황부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8.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01 종사자 호봉 확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사례요약



시설장과 영양사 신규 채용 시 동종직종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력과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경력을 유사경력(80%)으로 잘못 인정하여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호봉의 확정 원칙

-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경력인정 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0%인정
- 유사경력 80% 인정 ex)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서 관련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등
- 군 복무경력(100%)은 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 (예외) 예술체육요원·승선근무예비역·산업기능요원·무관후보생 경력 군복무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 경력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하고,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 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 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임용 일로부터 3월 이내 완료함

처분내용

- (시정) “△△△요양원”에서 시설장(○○○) 및 영양사(○○○)를 채용하면서 채용 전 경력 인정 착오에 의한 호봉 확정 잘못으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 인건비 총 00,000,000원 국고 환수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가]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위와 같은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02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보조금) 미반납

사례 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종사자가 퇴직하였음에도, 회계연도 종료 후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한 퇴직적립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

관련 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적사례(상세)

- “☆☆☆☆시설”에서는 [표]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종사자인 ○○○ 등 2명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한 퇴직적립금 0,000,000원을 20** . ** . ** 조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시설 퇴직적립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미반납 현황

(단위: 원)

시설명	성명	입사일	퇴사일	미반납 금액	자금원천
****시설	***(** ** **)	2017.11.01.	2018.03.31.	*** **	보조금
	***(** ** **)	2018.02.09.	2018.05.15.	*** **	
합계		2명		* ** , ** *	

처분내용

- (시정) “☆☆☆☆시설”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 종사자인 ○○○ 등 2명의 퇴직적립금 총 0,000,000원을 국고 환수 조치

0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이 원칙(불가능한 종사자는 대체 증빙서류 필요)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며 지문등록 및 인식이 신체적 특성 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
- 시간외근무수당은 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기준 준수

처분내용

- (시정)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총 0,000,000원을 국고 환수 조치

지적사례(상세)

- “□□□”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2016년 01월부터 2019년 05월까지 [표]와 같이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출·퇴근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시설장 ○○○ 등 종사자 11명에게 31회에 걸쳐 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 ○○○과장 등 3명에게는 교대 근무자가 아닌 일반 종사자임에도 2016년 01월부터 02월까지 2개월간 일반 종사자 지급 상한 2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를 모두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총 0,00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원 보조금 총 0,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원)

시설명	종사자명	복무상황		시간외근무수당 과지급(원)				
		유형	기간	근무일시	근무시간(A)	시간단가(B)	과다지급액(C=A*B)	
계					168		* , *** , ***	
□□□	소계				48		*** , ***	
	*** (시설장)		2018(2회)	'18.08.30. '18.08.31.	2	'18년 22,850원	** , ***	
	*** (사무국장)	시간외 근무내역 확인불가	2016(1회) 2018(6회) 2019(2회)	'16.01.02. '18.01.24. '18.02.06. '18.02.17. '18.07.30. '18.10.13. '18.12.22. '19.03.12. '19.04.15.	18	'16년 24,910원 '18년 26,710원 '18년 27,090원 '19년 27,710원	*** , ***	
	*** (****과장)		2018(2회)	'18.04.06. '18.04.19.	2	'18년 25,300원	** , ***	
	*** (****과장)		2018(1회)	'18.10.04.	1	'18년 27,070원	** , ***	
	~ 중략 ~							
	*** (간호사)		2018(2회)	'18.07.31. '18.08.29.	2	'18년 18,860원	** , ***	
	*** (위생원)		2018(1회)	'18.12.03.	1	'18년 15,710원	** , ***	
	*** (운전기사)		2018(2회)	'18.01.13. '18.02.17.	6	'18년 12,580원	** , ***	
	소계					120		* , *** , ***
	*** (****과장)		인정시간 20시간 초과	2016. 1월~2월	'16.1월 8회 '16.2월 9회	40	** , ***	*** , ***
	*** (생활지도원)				'16.1월 7회 '16.2월 8회	40	** , ***	*** , ***
	*** (시설관리)	'16.1월 12회 '16.2월 11회			40	** , ***	*** , ***	

0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종사자와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사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지 아니함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 공무원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의미함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 등

처분내용

- (시정) “☆☆☆센터”, “○○○시설”,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가족수당 총 0,000,000원을 국고 환수 조치

지적사례(상세)

- “□□□재단” 산하 3개 시설에서 보조금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부(父) 또는 모(母)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구성이 되어있지 않거나, 해당 종사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와 같이 종사자 3명에 대하여 2015년 01월부터 2019년 05월 까지 총 0,00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내역

(단위 : 원)

시설명	종사자(직위)	지급기간	지급금액	가족수당 대상가족
합계			* , *** , ***	
☆☆☆센터	○○○ (생활재활교사)	소계	* , *** , ***	부(父) 모(母)
		2015.01.~12.	*** , *** (2명×**천원×12개월)	
		2016.01.~12.	*** , *** (2명×**천원×12개월)	
		2017.01.~12.	*** , *** (2명×**천원×12개월)	
	2018.01.	*** , *** (2명×**천원×1개월)		
	소계	*** , ***	모(母)	
	2018.03.~12.	*** , *** (1명×**천원×10개월)		
2019.01.~05.	*** , *** (1명×**천원×5개월)			
◎◎◎시설	□□□ (생활재활교사)	소계	*** , ***	부(父) 모(母)
		2018.02.~12.	*** , *** (2명×**천원×11개월)	
		2019.01.~05.	*** , *** (2명×**천원×5개월)	
△△△사업장	▲▲▲ (원장)	소계	* , *** , ***	모(母)
		2015.01.~12.	*** , *** (1명×**천원×12개월)	
		2016.01.~12.	*** , *** (1명×**천원×12개월)	
		2017.01.~12.	*** , *** (1명×**천원×12개월)	
		2018.01.~12.	*** , *** (1명×**천원×12개월)	
		2019.01.~05.	*** , *** (1명×**천원×5개월)	

05 주무관청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검직

사례요약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회계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산하시설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회계관리 등 법인업무(수입·지출 등)를 수행하게 한 사례

관련규정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7조, 제26조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이 임면함
- ◎ 「○○○○법인 정관」 제○○조 - 사무조직 및 운영
 -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둠

처분내용

- (주의)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 법인회계 수입원·지출원 임명 및 법인 고유사무를 담당할 법인 직원을 채용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 (시정) 법인 산하시설 “▲▲▲▲작업장” 시설 종사자의 법인 사무 검직과 관련하여 관할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는 법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사자를 채용하고 법인 행정업무와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를 처리할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회계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표]와 같이 산하시설 직원에게 법인회계의 수입과 지출업무 및 행정업무를 하게 하는 등 법인 사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표] 사회복지법인 □□□□재단 행정업무 처리 현황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처리기간	결재선			비고
					기안	검토	결재	
법 인 사 무	법인	대표이사 (비상근)	***	2002.06.28. ~ 현재까지			○	
	산하시설 (****작업장)	사무국장 (시설장)	***	2002.06.28. ~ 현재까지 (위촉 : 2015.01.01.)		○		
	산하시설 (****작업장)	담당자 (직업재활교사)	***	2015.01.01. ~ 현재까지	○			

06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60세 초과 미준수)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은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처분내용

- (시정) "☆☆☆☆시설"에서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인건비) 총 00,000,00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요구

지적사례(상세)

- “☆☆☆☆시설”에서 [표 1]과 같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일(2012.06.**.) 이후인 2013.01.01.에 퇴사한 종사자 AAA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일(2011.06.**.) 이후인 2012.01.01.에 퇴사한 종사자 BBB에게 [표 2]와 같이 보조금 인건비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총 00,000,000원의 보조금(인건비)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초과자 현황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보조금 지급 상한일자	실제 퇴사일자	비고
AAA	1942.06.**	1975.01.01.	2012.06.**.	2013.01.01.	
BBB	1951.01.**	2003.01.01.	2011.06.**.	2012.01.01.	

[표 2]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초과자 인건비 과다 지급 내역

(단위: 원)

성명	구분	인건비 과다 지급금액						
		합계 (A)+(B)	*, ** , ***	*, ** , ***	*, ** , ***	*, ** , ***	*, ** , ***	*, ** , ***
AAA	지급 연월	2012년 7월	2012년 8월	2012년 9월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계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B	지급 연월	2011년 7월	2011년 8월	2011년 9월	2011년 10월	2011년 11월	2011년 12월	계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국외 출장자 근무상황부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등으로 공무 상 국외 출장 시, 출장 계획수립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 않고 출장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 의 산하시설 종사자들이 국외 출장 시 근무상황부 기재 및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정 조치

지적사례(상세)

[표] 국외 출장 보고서 미작성 현황

(단위: 원)

시설명	성명	주관기관	출국일	입국일	국가명	비용부담			
						협회	법인·시설	개인부담	합계
원	*	***협회	2014.06.18.	2014.06.21.	***	***,***	***,***		***,***
	***	***연구회	2013.09.06.	2013.09.08.	***				
	***	***협회	2014.10.23.	2014.10.28.	***	***,***	***,***		***,***
*** 복지관	***	자체	2011.11.30.	2011.12.03.	***		***,***		***,***
	***	자체	2012.08.30.	2012.09.04.	***	***,***			***,***
	***	***협회	2014.02.17.	2014.02.21.	***	***,***			***,***
	***	***협회	2014.06.18.	2014.06.21.	***	***,***		***,***	***,***
** 어린이집	***	자체	2011.01.21.	2011.01.25.	***		***,***		***,***
	***	자체	2012.08.30.	2012.09.03.	***		***,***		***,***
센터	*	***협회	2014.06.18.	2014.06.21.	***	***,***		***,***	***,***

08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사례요약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이 ☆☆☆에서 시행한 노숙인일자리사업 “희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허위로 사업 참여자를 등록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시설장이 횡령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처분내용

- (시정) “□□□시설”의 시설장 ○○○이 횡령한 보조금 00,000,000원을 국고 환수 조치
- (형사고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요구

지적사례(상세)

[표] □□□시설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 허위참여자 인건비 지급현황 (단위: 원)

기간	허위 참여자	생년월일	인건비	기간	허위 참여자	생년월일	인건비
2011.11월	***	19**.*.*.*	303,420	2013.06월	***	19**.*.*.*	334,690
2011.12월	***	19**.*.*.*	303,420	2013.07월	***	19**.*.*.*	334,690
2012.01월	***	19**.*.*.*	316,930	2013.08월	***	19**.*.*.*	350,680
2012.02월	***	19**.*.*.*	316,930	2013.11월	***	19**.*.*.*	348,120
2012.03월	***	19**.*.*.*	316,930	2013.11월	***	19**.*.*.*	334,300
2012.03월	***	19**.*.*.*	316,930	2013.12월	***	19**.*.*.*	334,300
2012.04월	***	19**.*.*.*	316,930	2013.12월	***	19**.*.*.*	348,120
2012.04월	***	19**.*.*.*	316,930	2013.12월	***	19**.*.*.*	334,300
2012.05월	***	19**.*.*.*	316,930	2014.01월	***	19**.*.*.*	358,540
2012.05월	***	19**.*.*.*	316,930	2014.01월	***	19**.*.*.*	378,660
2012.06월	***	19**.*.*.*	316,930	2014.01월	***	19**.*.*.*	358,540
2012.06월	***	19**.*.*.*	316,930	2014.02월	***	19**.*.*.*	358,540
2012.07월	***	19**.*.*.*	316,930	2014.02월	***	19**.*.*.*	378,660
2012.07월	***	19**.*.*.*	316,930	2014.03월	***	19**.*.*.*	358,540
2012.08월	***	19**.*.*.*	316,930	2014.03월	***	19**.*.*.*	378,660
2012.08월	***	19**.*.*.*	316,930	2014.04월	***	19**.*.*.*	358,540
2012.09월	***	19**.*.*.*	316,930	2014.06월	***	19**.*.*.*	378,290
2012.10월	***	19**.*.*.*	316,930	2014.07월	***	19**.*.*.*	378,290
2012.11월	***	19**.*.*.*	316,930	2014.08월	***	19**.*.*.*	378,290
2012.12월	***	19**.*.*.*	316,930	2014.09월	***	19**.*.*.*	378,290
2013.01월	***	19**.*.*.*	316,770	2014.09월	***	19**.*.*.*	358,210
2013.02월	***	19**.*.*.*	316,770	2014.10월	***	19**.*.*.*	378,290
2013.03월	***	19**.*.*.*	334,710	2014.11월	***	19**.*.*.*	378,290
2013.03월	***	19**.*.*.*	334,710	2014.11월	***	19**.*.*.*	358,210
2013.04월	***	19**.*.*.*	334,690	2014.12월	***	19**.*.*.*	375,760
2013.05월	***	19**.*.*.*	334,690	2014.12월	***	19**.*.*.*	358,210
				2014.12월	***	19**.*.*.*	370,670
소 계			8,283,920	소 계			9,738,680
			총 계				18,022,600

0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사례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음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따른 아동의 매매,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처분내용

- (시정)★★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 등 4명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 (과태료) 위 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지적사례(상세)

[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미조회 현황

시설명	프로그램명	강사명	근로계약서 작성일	근로조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
★★ 지역아동센터	계	4명			
	미술	***	20**.**.*. ~ 20**.**.*.	주1일 (1일 1시간)	미조회
	합창	***	20**.**.*. ~ 20**.**.*.	주1일 (1일 1시간)	미조회
	요가	***	20**.**.*. ~ 20**.**.*.	주1일 (1일 2시간)	미조회
	오카리나	***	20**.**.*. ~ 20**.**.*.	주1일 (1일 2시간)	미조회



Ⅲ

회계관리

1. 시설 간 회계 구분 부적정
2.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법인 산하기관으로 무단 전출
3. 법인 및 시설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집행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주무관청 승인 없이 부적정 사용
5.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해지 환급금 미반납
6. 식자재(주·부식류 등)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7. 장기요양기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부적정
8. 시설 보조금으로 법인 사무국 등 공공요금 부당 납부
9. 시설 프로그램 수익금 운용 부적정
10.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11. 예산편성 시 세출목 편성 부적정
12. 시설운영비(보조금)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
13.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 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품 구매 계약 관리 부적정
15. 시설운영비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01 시설 간 회계 구분 부적정

사례요약



동일건물 내에서 운영 중인 시설 간에 공공요금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차량의 유류비 등을 시설회계 구분없이 혼용하여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례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처분내용

- (시정) “★★요양원”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공공요금 등 총 10,901,270원을 “◎◎보호센터”로부터 반환 받아 보조금으로 납부한 5,025,453원은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기타 금액 5,875,817원은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 (시정) “◎◎보호센터”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모닝 차량 수리비 총 974,570원을 “★★요양원”으로부터 반환받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동일건물에서 운영 중인 “★★요양원”과 “◎◎보호센터”에서 사용한 수도·전기·난방비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각 시설 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각각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보호센터”에서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 총 10,901,270원(2017년 5,027,980원, 2018년 5,873,290원)을 “★★요양원”에서 부담하게 지출하였다.

• 아울러, “★★요양원”에서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차량 모닝(**수***)을 “◎◎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사용기준 없이 유류비를 두 시설에서 혼용 지출하였으며, [표 2]와 같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닝 차량 수리비 총 8건, 974,570원을 “◎◎센터”에서 부담하게 지출하였다.

[표 1] 시설회계 공공요금 등 부적정 지출내역

(단위 : 원)

년도	지출 내역	부담현황(원) (자금원천별 지출현황)		합 계(c=a+b)	◎◎보호센터 부담하여야 할 비용 d=c×부담비율(참고)-b
		★★요양원(a)	◎◎보호센터(b)		
2017년	수도	4,423,530 (수익사업 1,467,990 / 보조금 3,060,910)	0	4,423,530	442,350
	~ 중략 ~				
2018년	수도	4,494,220 (수익사업 1,128,330 / 보조금 3,366,890)	423,330 - 4월 (수익사업 423,330)	4,917,550	737,630
	~ 중략 ~				
합 계					10,901,270

[표 2] 회계의 구분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지출일자	세출목	적요	지출금액	자금원천	비고
시설회계 (◎◎보호센터)	2018.04.09.	차량비	자동차수리비 (모닝)	200,000	수익사업(장기요양급여 수입)	★★요양원에서 지출하여야 함
	2018.05.21.	차량비	모닝 타이어교환	260,000	수익사업(본인부담금비 용수입)	
	~중략~					
합 계				974,570		

[유사사례] 법인의 법인세를 산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납부

- 법인 산하기관 수익사업(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자금이체 하는 경우, 법인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의 법인회계 세입에 산과목 구분상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711) 계정으로 수입처리 한 후, 법인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이 설치한 산하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자금(시설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그런데, 해당 법인인 “□□□□ 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납부되었는데, 법인 전입금 계정으로 수입처리 후 지출된 것이 아니라, [표]와 같이 법인 산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직접 납부함으로써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회계 구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 복지재단 법인세 납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	비고
2019년	법인세	2019.08.29.	5,523,230	▲▲▲요양병원에서 법인세 납부
2018년	법인세	2019.03.29.	7,322,120	
2018년	법인세	2018.08.29.	3,724,350	
2017년	법인세	2018.08.06.	1,106,830	
2017년	법인세	2018.04.02.	13,221,210	
2017년	법인세	2017.08.31.	7,035,050	

처분내용

- (시정) “□□□□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법인회계에서 법인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할 지역 내 위와 같은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02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법인 산하기관으로 무단 전출

사례요약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전출 시 법인회계로 전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등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산하 시설 간에 무단으로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을 직접 전출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예산을 편성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이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총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
- 잉여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회계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나,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 가능함

처분내용

- (시정) 법인 산하시설 “☆☆복지센터”에서 부당하게 전출된 총 11,696,000원을 시설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지적사례(상세)

- 법인 산하시설 “☆☆복지센터”에서는 법인 산하기관인 “△△△연구소”로 직접 전출이 불가함에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소”로 회당 1,462,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총 11,696,000원을 부당하게 전출하였다.

[표] ☆☆복지센터 법인 전출금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년 도	전 출 금	자 금 원	비 고
☆☆ 복지센터	2017.02.03.	1,462,000	수익사업	☆☆복지센터 → △△△연구소
	2017.06.13.	1,462,000	수익사업	
	2017.08.29.	1,462,000	수익사업	
	2017.12.08.	1,462,000	수익사업	
	2018.03.05.	1,462,000	수익사업	
	2018.04.05.	1,462,000	수익사업	
	2018.07.03.	1,462,000	수익사업	
	2018.08.29.	1,462,000	수익사업	
	계		11,696,000	

03 법인 및 시설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집행

사례요약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지출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편성·확정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고, 세출예산 초과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확인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
- (주의)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에서 [표 1]과 같이 2015년과 2017년에 세출 항목 총 4건의 세출예산액이 총 6,500,000원(A)이나 세출 결산액이 총 713,043,140원(B)으로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총 706,543,140원(C)을 과다 지출하였다.

[표 1] 사회복지법인 □□□□의 법인회계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단위: 원)

연도별	과 목			세출예산액 (A)	세출결산액 (B)	초과집행액 (C=B-A)
	관	항	목			
합계	4 건			6,500,000	713,043,140	706,543,140
2015년	소계: 3 건			3,500,000	691,977,380	688,477,38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3,000,000	319,400,000	316,400,0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500,000	368,627,380	368,127,380
	예비비 기타	예비비 기타	반환금	0	3,950,000	3,950,000
2017년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 장비비	3,000,000	21,065,760	18,065,760

- 또한, 법인 산하시설인 “★★★★복지센터”에서는 [표 2]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출항목 39건의 세출예산액이 총 555,325,623원(A)이나 세출결산액이 총 1,317,485,134원(B)으로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762,159,511원(C)을 과다 지출하였다.

[표 2] ★★★★★복지센터 시설회계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단위: 원)

연도별	과 목			세출예산액 (A)	세출결산액 (B)	초과집행액 (C=B-A)
	관	항	목			
합계	39 건			555,325,623	1,317,485,134	762,159,511
2015년	소계: 13건			283,177,360	660,675,790	377,498,430
	사무비	인건비	사회보험금	91,443,480	163,032,300	71,588,820
	~ 중략 ~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623,880	248,744,685	248,120,805
~ 중략 ~						
2017년	소계: 13건			92,809,419	149,711,082	56,901,663
	사무비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1,200,000	1,574,500	374,500
	~ 중략 ~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800,000	2,077,606	1,277,606

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주무관청 승인 없이 부적정 사용

사례요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수익금 일부를 종사자 시간외수당으로 사용한 사례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불가

지적사례(상세)

- “□□□□작업장”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12월에 작업장 종사자 3인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사업수익금에서 총 440,0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표] 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지출 부적정

구분	날짜	시간 외 시간	금액(원)
계	-	21 H	440,080
성**	2018.12.24.	5 H	135,300
이**	2018.12.24.	8 H	146,030
문**	2018.12.24.	8 H	158,750

처분내용

- (시정) “□□□□ 작업장”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없이 종사자 시간외수당으로 사용한 사업 수익금 총 440,080원을 시설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

05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해지 환급금 미반납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과 종사자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시설에서 보관·관리해 온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처분내용

- (시정) “☆☆☆☆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계좌에 보관해온 18,040,270원과 종사자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 등 118,940원, 합계 18,159,21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 (시정) “○○○○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계좌에 보관해온 5,296,990원과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 등 592,680원, 합계 5,889,67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 (행정처분) 아울러, 위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지적사례(상세)

- 법인 산하 “☆☆☆☆시설” 및 “○○○○시설”에서 매 연도 말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정산한 후, 그 재원이 보조금인 사용자부담 보험료 잔액이나 기타 보조금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시설”에서는 18,040,270원, “○○○○시설”에서는 5,296,990원 등 총 23,337,260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을 2019년 조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별도 관리하였다.

[표 1] ☆☆☆☆시설 및 ○○○○시설 사회보험료 등 정산 잔액 미반납 현황

(단위: 원)

구 분	계	2018년 이전분	2018년
총 계	23,337,260	15,835,870	7,501,390
☆☆☆☆시설	18,040,270	14,800,360	3,239,910
○○○○시설	5,296,990	1,035,510	4,261,480

- 또한, “☆☆☆☆시설”, “○○○○시설”에서는 [표 2]와 같이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등이 보조금으로 지출된 후 중도해약으로 반환이 되었음에도 “☆☆☆☆시설”은 7건 / 118,940원, “○○○○시설”은 28건 / 592,680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시설회계에 편입하여 지출하거나 시설의 잡수입 계좌에 보관하였다.

[표 2] 종사자 상해보험 등 중도해지 환급금 현황

(단위: 원)

시설명	년월일	세입 계정	금액	비고
☆☆☆☆시설	2018.08.07.	잡수익	36,040	재정보험료 환급(AAA)
	~중략~			
	소계		118,940	
○○○○시설	2014.01.08.	잡수익	63,430	4**2 자동차보험 해약
	~중략~			
	소계		592,680	

06 식자재(주·부식류 등)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자재 계약 입찰 시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연간 구매계획물량(총액)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 별(340여개) 단순 합계가 최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단가가 낮은 일부 계약품목은 배제하고 고가의 유사제품으로 납품 변경하는 등 입찰 및 계약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처분내용

- (시정, 행정처분) “☆☆☆시설”에서 주·부식류 등 식자재 구입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기간·물량·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입찰방법 등을 검토하고,
 -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수의계약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한 공개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지적사례(상세)

□ “☆☆☆시설”은 [표 1]과 같이 매년 주·부식류 등 식자재 구매 입찰 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 지정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 홈페이지 및 지역 생활정보지(교차로)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특정업체 2~3개 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낙찰자 선정은 구매 계획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340여개 입찰품목별 단가의 단순 합계가 최저인 업체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 또한, [표 2]와 같이 2016년도 계약업체로 선정된 (주)■■■■의 경우 ‘쇠고기(국내산한우 2등급) 1kg 납품단가 등을 비정상적 가격인 100원’으로 제시하고 계약체결 이후 해당 최저가 품목에 대한 납품 요구실적은 단 1건도 없었으며,
- 그 대신 유사 대체물품(호주산 쇠고기 1kg 등)을 정상 가격인 9,500원~12,000원에 구매하는 등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이 형식적이고 허점투성이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등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 (총액입찰, 예시) 비교적 단가변동이 적은 공산품 등의 경우는 연간 계획물량을 고려한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낙찰 총액에 맞는 품목별 계약단가 목록대로 납품을 받는다.

* (단가입찰, 예시) 물량 및 단가변동이 심한 과일, 야채류, 육류 등을 연간 계약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품목별 규격 및 합리적인 계약단가 변동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표 1] 연도별 입찰참여 업체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참여업체	(주)■■■■(낙찰) ***상회 ***유통	***상회(낙찰) (주)■■■■	주)■■■■(낙찰) ***상회 ***유통	일반경쟁
지출금액	258	209	243	

[표 2] 특정품목 낙찰가격 및 실제 구매실적 현황

(단위 : 원)

품목	낙찰가격			실제 구매 현황		
	규격	견적가격	납품 실적	규격(대체)	단가	구매액
소고기	국내산 한우(2등급 1k)	100	없음	호주산(1kg))	9,500 ~ 12,000	22,261,400
소갈비	호주산(짚, 탕용 1k)	100	없음			
닭다리	국내산(복채 1k)	500	없음	닭도리, 닭봉(1kg))	4,000 ~12,000	6,057,000
알감자	국산 상품(1k)	500	없음	일반감자(1kg))	2,200	1,841,400
토마토	박스 5k	1,000	없음	방울토마토(박스 5kg)	21,000	2,268,000
오리고기	국내산, 살코기(냉장 1k)	1,000	없음	오리훈제(900g)	14,000	1,792,000
돈까스	수제 등심(100g*20개입)	500	없음	생선가스(1.2k*5개입)	5,500	385,000

[유사사례]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시설 “☆☆☆시설”, “△△△시설”, “◎◎◎시설”에서 0000년도 주·부식류 등 단순 식자재 구매계약을 하면서 정형화되지 않은 특정 성능 규격(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을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입찰)을 부적절하게 적용·실시하면서,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입찰공고문에 공고하거나 또는 열람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평가항목에 ‘본 시설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안(10점/100점)’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입찰참여업체들의 각 제안서에는 ▶ 매출액의 10% 후원금 지원 ▶ 직원들에 대한 명절선물세트 할인 ▶ 직원을 위한 분기별 회식비 지원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 각 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한 결과 본 ‘부가서비스 제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거의 동일한 점수로 평가의 변별력이 없고 ‘부가서비스 제안’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의 “계약 상대방 간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청렴서약서상의 준수 사항인 “계약의 체결·이행에 따른 직·간접적 사례, 금품 향응 제공 금지”에 위배되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하였다.

처분내용

- **(시정)** “☆☆☆시설”, “△△△시설”, “◎◎◎시설”에서 주·부식류 등 식자재 구입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기간·수량·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입찰방법 등을 검토하고,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사례 및 금품 등을 받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하도록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07 장기요양기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부적정

사례요약



“☆☆☆요양원”에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운영·관리해 온 사례

관련규정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보건복지부)

처분내용

- (시정) 법인 정기예금에 예치된 00,000,000원을 시설 특별회계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계좌로 반환 조치
- (시정)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조치
- (주의)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을 지출할 때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도록 주의 조치

지적사례(상세)

- “☆☆☆요양원”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특정목적사업 예산 중 [표]와 같이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총 418,975,151원을 적립하면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에도 주무관청인 △△△시장에게 적립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립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을 지출하면서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않았다.
 - 또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은 시설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4.12.16. 적립금 중 일부인 95,200,000원을 본 시설 운영법인인 “□□□”에 이체하였고, 이후 법인“□□□”에서는 1년 뒤인 2015.12.15. 82,000,088원을 다시 “☆☆☆요양원”의 시설 특별회계의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통장에 입금하였다.
 - 법인 “□□□”에서는 “☆☆☆요양원”에 아직 돌려주지 않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잔액 13,199,912원과 이자 1,354,045원을 포함하여 총 14,553,957원은 2017.02.21. 법인 명의 정기예탁금 통장(**은행 : 1**-910***-66***)에 입금한 후 2018.07.13.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에서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다.

[표] 특정목적사업(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예산 적립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기관명	연도별	적립액	이자	지출액	잔액	비고
계	계	418,975,151	163,016	267,162,437	151,975,730	
☆☆☆ 요양원	2011년	8,000,000	0	0	8,000,000	
	2012년	29,000,000	2,682	35,000,000	2,002,682	
	2013년	39,036,216	2,566	32,800,500	8,240,964	
	2014년	86,938,847	20,189	95,200,000 ¹⁾	0	
	2015년	85,000,088 ²⁾	4,067	81,237,650	3,766,505	2015.12.15. 82,000,088원 법인에서 시설로 전출
	2016년	61,000,000	13,212	3,700,000	61,079,717	
	2017년	72,000,000	66,146	19,224,287	113,921,576	
	2018년	38,000,000	54,154	0	151,975,730	

* 주: 1) ☆☆☆요양원에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중 일부인 95,200,000원(①)을 2014.12.16. 법인으로 전출

주: 2) 85,000,088원은 2015.12.15. 법인에서 시설로 전출한 82,000,088원(②)이 포함됨

▶ 95,200,000원(①) - 82,000,088원(②) = 13,199,912원(③)

▶ 이자 발생액: 1,354,045원(④)

▶ 법인 정기예탁금: 14,553,957원 = 13,199,912원(③) + 1,354,045원(④)

08 시설 보조금으로 법인 사무국 등 공공요금 부담 납부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 사무국과 매점의 전기요금을 시설운영비(보조금)로 납부한 사례임

관련규정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처분내용

- (시정) “☆☆☆요양원”의 시설회계에서 부담한 전기요금 중 법인 사무국 및 임대매점 임차인이 사용한 3,435,675원, 1,083,627원을 각각 반환받아 국고로 환수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지적사례(상세)

- “☆☆☆요양원”에서는 각 시설물의 주체별, 용도별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해당 시설 내 법인 사무국(39.6㎡, 제0동 일부) 및 매점(233.54㎡, 임대사업장, 신관 일부)의 전기요금을 조사일 현재까지 “☆☆☆시설”의 시설회계에서 일괄 납부하는 등 법인 사무국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3,435,675원, 매점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1,083,627원을 보조금으로 각각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2014 ~ 2018년 10월까지 ☆☆☆요양원 전기요금 지출현황

(단위: 원)

구분	☆☆☆요양원 지출금액	법인□□□□ 사용금액(미납)	매점 사용금액 (미납)
합 계	393,041,380	3,435,675	1,083,627
2014년	80,435,780	606,494	-
2015년	80,435,780	606,494	-
2016년	87,051,360	702,986	285,505
2017년	78,350,210	631,133	420,755
2018년	78,350,210	631,133	420,755

09 시설 프로그램 수익금 운용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내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지출 잔액을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별도 관리해 온 사례임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 목 구분에 따라 편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 예입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함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시설 “☆☆☆” 및 “△△△”에서 작업치료 프로그램인 ‘쇼핑백 제작 재활작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별도로 관리 하고 있는 잔액 계 1,526,820원을(☆☆☆ 1,112,220원, △△△ 414,600원) 각각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 및 “△△△”에서는 [표]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설 내 작업치료프로그램인 ‘쇼핑백 제작 재활작업’을 통해 매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입소인 작업자 인건비 및 작업 제경비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으나, 매년 지출 잔액이 발생하는 등 동일한 수입 및 지출 형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발생한 수익금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조사일(2017.02.10. 현재) 기준으로 발생한 지출 잔액 계 1,526,820원(☆☆☆ 1,112,220원, △△△ 414,600원)을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별도 관리해 왔다.

[표] 시설별 작업치료 프로그램(쇼핑백 제작) 수익금 사용내역

(단위: 원)

시설명	기간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	비고
			인건비	기타		
☆☆☆	2012년	37,433,854	36,953,000	499,800	455,361	잔액은 매년 이월 처리
	2013년	30,681,909	30,498,000	184,000	455,270	
	2014년	22,280,646	22,241,000	120,000	374,916	
	2015년	25,131,677	25,082,500	0	424,093	
	2016년	29,898,131	28,963,000	247,000	1,112,224	
△△△	2012년	43,637,694	41,683,620	1,727,900	226,174	잔액은 매년 이월 처리
	2013년	49,833,593	48,187,570	950,500	695,523	
	2014년	49,905,754	48,713,010	889,067	303,677	
	2015년	39,331,763	37,322,770	1,808,702	200,291	
	2016년	39,076,154	35,294,546	3,367,000	414,608	

10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사례요약



법인 회계관계직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고, 보조금 인건비 지원 시설 종사자가 관할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없이 법인 사무를 겸직한 사례임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함.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
-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법인 회계관계직에 대하여 즉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
- (시정) “☆☆☆시설”에서 보조금 인건비 지원 시설 종사자가 법인 사무를 겸직 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정) “★★★요양원”에서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각각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지적사례(상세)

- “☆☆☆시설”에서 [표 1]과 같이 원장 AAA는 관할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없이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현재까지 재정보증 없이 법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등 법인사무를 겸직하였다.
- 또한, “★★★★요양원”에서 [표 2]와 같이 사무원 BBB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설 회계관 임명을 받았으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2017년 07월 19일에 가입하는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였고, 2019년 06월 현재까지 소규모 시설이 아님에도 수입원과 지출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표 1] 신원보증보험 가입 현황

기관명	당시 직책	성명	근무기간	회계관임명일	보증보험 가입일
사회복지법인 □□	☆☆☆시설 원장(겸직)	***	2017.01.01.~현재	2017.01.01.	미가입
☆☆☆ 요양원	사무원	***	2017.01.01.~현재	2017.01.01.	2017.07.19.

[표 2] 회계관계직원 지정 현황

시설명	구분	직책	성명	지정일자
★★★★요양원	수입 및 지출 관리자	사무국장	***	2017.01.01.
	수입원	사무원	***	2017.01.01.
	지출원	사무원	***	2017.01.01.

11 예산편성 시 세출목 편성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세출을 기타후생경비로 세출목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사례임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 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지적사례(상세)

- “△△△요양원”에서는 직원 경조사비, 격려 만찬 회식 등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 성격의 세출과 직원 근무복 구입, 중·석식비 등 기타운영비(운영비) 성격의 세출을 기타후생경비(인건비)로 부적절하게 세출목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며,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가스)를 연료비가 아닌 생계비로 부적절하게 세출목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세출목)을 부정적으로 편성하였다.

처분내용

- (주의) “△△△요양원”에서 예산편성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세입·세출 항목에 부합하게 편성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12 시설운영비(보조금)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

사례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시설 보조금 관련 카드를 소지하고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한 사례임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현 법인 대표이사 ○○○가 산하시설 보조금카드 등으로 개인용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000,000,00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 (고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아울러 최근 5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지적사례(상세)

- 법인 산하 ★★★어린이집의 전(前) 원장이며,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원장인 ○○○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지출명령권자 및 지출원이 아님에도 ☆☆☆아동시설의 보조금 관련 카드를 [표]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 대표이사 ○○○은 본인이 전담으로 보조금 카드 3개를 쓴다고 진술하였으며, 대표이사 ○○○가 사용한 카드에 대한 것은 내부품의가 없으며,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보면 대표이사 ○○○가 주로 사용한 카드의 경우 카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후 작성된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등에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가 상당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예컨대, 보조금 생계비카드(94**-31**-51**-7**9)로 사용한 대형할인점인 (주)◎◎◎★★★, **점(2014. 5. 22. 302,600원), 대형할인점인 (주)☆☆☆ **점(2017. 4. 30. 284,400원), 기타잡화점인 **생활용품(2014. 5. 22. 152,500원) 등과 보조금 운영비카드(94**-31**-51**-7**5)로 사용한 대형할인점인 (주)□□□□ **점(2016. 12. 17. 206,100원), 일반 한식점인 ***사*들(2016. 12. 8. 77,000원) 등에서는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없는 등 식료품 및 할인점 내역으로 사용한 총 389건 56,295,030원과 식대 및 편의점 내역으로 사용한 총 362건 13,777,380원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 그밖에 **시 *구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2016. 12. 30.에 구입한 등유는 월동대책용 난방비에서 2,422천원이 지출되었으나, “☆☆☆아동시설”에서 실제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돈만 지출했으며 “★★★어린이집” 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이 “☆☆☆아동시설”의 운영비 카드(9***-31**-51**-7**5, 94**-31**-6***-4**2), 생계비 카드(*4**-31**-51**-7**9, *4**-31**-69**-4**1), 신용 카드(94**-*5**-46**-8**0)로 집행한 운영비 580건 계 45,970,980원, 생계비 391건 계 39,023,040원, 신용카드 277건 계 24,810,030원 등 총 1,248건 합계 109,804,050원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명령이 없고 지출결의서는 있지만 지출 첨부 서류가 없거나 영수증이 누락 되는 등 상당 건이 대표이사 ○○○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및 사용용도 불분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이 있다.

[표] ★★★보조금 부당집행 내용

(단위: 원)

내역	계		운영비		생계비		신용카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48	109,804,050	580	45,970,982	391	39,023,036	277	24,810,032
식료품, 할인점	389	56,295,030	142	15,053,580	157	25,754,190	90	15,487,260
식대, 편의점	362	13,777,380	169	6,737,260	128	5,056,170	65	1,983,950
~종략~								
서적	16	610,050	10	434,800			6	175,250
한우	2	498,940	2	498,940				
기타	185	11,595,772	99	6,952,030	20	881,370	66	3,762,372

13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 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

사례요약



시설에서 입소자와 종사자가 공동급식을 하면서 종사자 식대를 시설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1식 단가 이하로 책정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수급권자)의 생계비(식단) 질 저하를 초래한 사례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처분내용

- (시정, 행정처분) “☆☆☆시설”에서 입소자와 종사자가 공동급식을 하면서 시설 생계급여(보조금)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28,971,24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요구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시설인 “☆☆☆시설”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 02월까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공동급식을 하였는바, [표 1]과 같이 시설 입소자와 같이 공동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로부터 입소자와 동일한 단가에 맞춰 급식비를 수납하여야 함에도 종사자 1인당 월 20,000원(1식 단가 : 1,000원, 총 20,100,000원 수납)을 수납함으로써, 입소자 1식 단가(1,978원 ~ 2,202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으로 공동 급식을 함에 따라 시설 입소자의 생계비(식단)에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시설 수급권자의 생계비(보조금)를 시설 종사자가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종사자 식대수납액

(단위 : 원)

해당기간	입소자 1식 단가 적용액	수납액	수납 부족액	비고
계	42,383,740	20,100,000	22,283,720	
2014년 2월~12월	*, ***, ***	3,780,000	3,617,720	
~ 중략 ~				
2018년 1월~12월	*, ***, ***	4,080,000	4,904,160	

- 따라서, 시설 생계비 1식 단가를 감안할 때 [표 2]와 같이 시설 생계급여비(보조금) 총 28,971,240원을 예산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2] 시설 생계비 목적 외 사용액(환수금액)

(단위: 명, 원)

해당기간	종사자수	생계비 1식단가	종사자 급식액(A)	종사자 납부 식대사용처		보조금 환수금액 (A-B-C)
				주·부식비 등 (B)	생계비 관련 운영비 (C)	
계			42,383,720	10,099,480	3,313,000	28,971,240
2014년 2월~12월	17	1,978	7,397,720	0	0	7,397,720
2015년 1월~12월	17	2,024	8,257,920	0	1,980,000	6,277,920
2016년 1월~12월	17	2,172	8,861,760	9,099,420	1,333,000	-1,570,660
2017년 1월~12월	17	2,177	8,882,160	0	0	8,882,160
2018년 1월~12월	17	2,202	8,984,160	1,000,060	0	7,984,100

* 종사자 무상급식액(A) : 종사자수(축탁의 등 제외)×1식단가×월간 근무일수(20일)×개월수

** 시설입소자를 위한 주부식비 등(B) : 시설입소자를 위한 주부식비 및 운영비 등 지출액

*** 수납액(20,100,000원) 중 종사자 납부 식대사용처(13,412,480원)를 뺀 차액(6,687,520원)은 현재 통장 잔액으로 보관중

[유사사례]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

□ “○○○○복지센터”에서는 2015년 01월부터 2018년 06월까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공동급식을 하였는바, [표 1]과 같이 시설 종사자로부터 수납한 식대 수입금 60,812,380원 중 45,741,295원은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인 15,071,085원은 별도통장에 보관·관리하는 등 공동급식에 따른 시설 입소 아동의 생계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시설생계비 1식 단가를 감안할 때 [표 2]와 같이 시설 생계급여비(보조금) 8,512,820원을 예산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1] 직원 식대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명, 원)

수납기간		식대 수입(B)	식자재 구입비용(C)	차액 (C=B-C)	월 수납액(D)	월평균 식사인원 (E=B/A/D)	회계 처리
기간	개월 (A)						
합 계		60,812,380	45,741,295	15,071,085			
2015년 (1~12월)	12	14,310,830	13,722,605	588,225	70,000	17	시설 회계 잡수입
~ 중략 ~							

[표 2] 시설생계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단위: 명, 일, 개월, 원)

수납기간		월평균 식사 인원(B)	생계비 1식 단가(C)	월평균 근무 일수(D)	종사자 무상 급식액 (E=AxBxCxD)	식자재 구입비용(F)	보조금 환수금액	자금 원천
기간	개월 (A)							
합 계					42,263,340	45,741,295	8,512,820	
2015년 (1~12월)	12	17	2,141	20	8,735,280	13,722,605	-	보조금
~ 중략 ~								

처분내용

- (시정, 행정처분) “○○○○복지센터”에서 입소자와 종사자의 공동급식으로 인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보조금) 8,512,820원을 환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품 구매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요약



복사용지와 종이컵 등을 제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원자재 구입 시 일정 금액 이상임에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이행 중에도 수정계약 없이 시설장이 임의로 자재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해 주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 등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처분내용

- (시정1)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복사용지 원료 및 포장박스 등 물품 구입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기간·물량·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입찰방법 등을 검토하고,
 -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수의계약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한 공개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정2)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정계약 절차 없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납품 단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납품 대금 총 16,156,000원을 시설 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
- (행정처분) 위(시정2)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지적사례(상세)

-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복사용지와 종이컵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표 1]과 같이 복사용지 종이 원료를 “(주)△△△△”로부터 연간 2억원에서 5억원 이상 구입하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복사용지와 종이컵의 납품 포장박스를 연간 2천만원 이상 “****포장재”로부터 구입하면서 비교 견적을 통한 단가의 적정성 확인 없이 수년간 해당 업체에서 포장박스를 일반 구매하였다.

[표 1] ☆☆☆장애인근로사업장 물품거래 내역

(단위: 천 원)

거래처명	주소	물품 거래명	계약기간	거래금액	계약체결
(주) △△△△	** *구	복사용지 (원료)	2017.05.20.~2018.05.29.	534,120	수의계약
			2018.06.01.~2019.05.31.	233,191	
****포장재	** **성	포장박스	2017.01.01.~2017.12.31.	32,595	미체결
			2018.01.01.~2018.12.31.	28,831	

- 한편,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2017년 4월 17일에 “(주)△△△△”과 복사용지 75g·80g·85g의 원료 단가 계약을 2017. 5. 20일부터 2018. 5. 29일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 2017. 8. 29일 거래업체 “(주)△△△△”이 복사용지 원료가격 인상으로 복사용지 80g·85g에 대해 단가 인상 요청을 하였고,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는 단가 인상의 적정성 확인 및 수정 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복사용지 원료를 [표 2]와 같이 구입하면서 총 16,156,0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출하였다.

[표 2] ☆☆☆장애인근로사업장 물품구매 현황

(단위: 원)

구 입 일	복사 용지	수량	계 약 단 가		구 입 단 가		차액(B-A)
			단가	금액(A)	단 가	금액(B)	
2017.08.29.	80g	984	32,000	31,488,000	33,000	32,472,000	984,000
2017.09.05.	85g	578	38,000	21,964,000	39,000	22,542,000	578,000
~ 종 략 ~							
2018.04.18.	80g	672	32,000	21,504,000	33,000	22,176,000	672,000
2018.04.27.	85g	816	38,000	31,008,000	40,500	33,048,000	2,040,000
2018.05.16.	80g	1,800	32,000	57,600,000	33,000	59,400,000	1,800,000
합 계		14,905		517,964,000		534,120,000	16,156,000

15 시설운영비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사례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 하는 포인트 등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임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 모든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시설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

지적사례(상세)

- “○○○시설”에서는 **은행 및 **은행의 시설운영비 전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총 1,015,302원을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하지 않았다.

처분내용

- (시정) “○○○시설”에서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0,000,000점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소멸되거나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사례전파 등 지도·점검 철저

IV

후원금 관리

1. 바자회 수익금(비지정후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2. 지정후원금 모집 시 지정기탁서 징구 부적정
3. 비지정후원금 간접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등)로 부적정 사용
4. 후원금 운영 부적정

01 바자회 수익금(비지정후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자선행사(바자회)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잡수입 등으로 부적정하게 세입 처리한 후 후원금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 ex)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사업수익금으로 세입 처리한 바자회 수익금 68,603,520원 중 바자회 경비로 사용한 15,472,020원을 제외한 53,131,500원(직책보조비 25,700,000원, 회의비 1,750,000원, 잔액 25,681,500원)을 법인회계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표]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물품 바자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 부스 및 물품판매 등으로 발생한 행사 수익금 총 00,000,000원을 법인회계의 비지정후원금으로 세입처리 하지 않고, 사업수익금(자부담)으로 세입처리하면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총 25,700,000원, 회의비로 총 1,750,00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표] ***** 물품 바자회 수익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구분	수 입		지 출		
	행사수익금	후원금	바자회경비 (바자회계좌)	직책보조비 (업추비)	회의비 (업추비)
2016년	12,882,000	8,802,421	2,269,760 (1,424,970)	2,000,000 (50만원×4회)	
2017년	17,996,100	5,000,000	5,773,360 (164,000)	8,400,000 (70만원×12회)	
2018년	17,253,000	6,670,000	7,428,900 (5,573,990)	10,800,000 (90만원×12회)	1,250,000
2019년	-	-	-	4,500,000 (90만원×5회)	500,000
계	48,131,100	20,472,421	15,472,020 (7,162,960)	25,700,000	1,750,000

[유사사례] 일일찻집 수익금(비지정후원금) 회계처리 부적정

- “☆☆☆요양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일일찻집 행사”를 실시하면서 [표]와 같이 행사 티켓 판매비 수입을 시설회계 ‘후원금 수입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세입처리 하여 지출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기타 잡수입 전용계좌 내 일일찻집 티켓판매 수익금 관련 내역

(단위: 원)

구분	수입		총 지출	연도말 통장 잔액	티켓 수익금 지출내역	비고
	총 수입	티켓 수익금				
계		37,173,000				
2016	138,392,017	14,763,000	147,049,668	3,430,609	비지정 후원금 용도 외 사용 확인불가	전년도 이월금 12,088,260
2017	149,416,929	15,837,000	150,635,666	2,211,872		
2018	137,147,750	6,573,000	131,715,304	7,644,318		

처분내용

- **(시정)** “☆☆☆요양원”에서 “**** 일일찻집 행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앞으로는 잡수입 계정이 아닌 비지정후원금으로 세입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02 지정후원금 모집 시 지정기탁서 징구 부적정

사례요약



지정후원금 모집 시 상세히 용도가 명시된 지정기탁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① 지정 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 용도로 볼 수 없음(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로 사용할 것
 -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 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일 것
 -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처분내용

- (시정)「사회복지법인 □□□□」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와 관련하여 지정후원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구체적 사용 용도가 명시된 지정후원금 ‘지정기탁서’를 받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지적사례(상세)

- 매년 “사회복지법인 □□□□”이 주최하고 산하시설에서 번갈아 주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를 12월(약 600~700명 참석)에 개최하면서 식대 및 프로그램 등 행사비용으로 2017년과 2018년에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연간 총 0,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17년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지원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지정기탁서 없이 비지정후원금으로 0,000만원을 후원받아 후원금 모집을 위한 행사비로 15%(000만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0,000만원 전액을 부당하게 행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
 - 다만 2018년도에는 ***18-**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 후원 요청’ 문서를 통하여 (주)△△△△으로부터 지정후원금 성격의 0,000만원을 후원받아 당해 연도 행사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다.

03 비지정후원금 간접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로 부적정 사용

사례요약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간접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로 부적정 집행한 사례

관련규정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 간접비 사용비율은 당해 연도 후원금 지출금액 기준임
 -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금지
 - * 업무추진비 등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 수당(단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초과 지급 불가)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함

처분내용

- (시정) “○○○○요양원”, “△△△△복지센터”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총 00,000,000원(○○○○요양원 00,000,000원, △△△△복지센터 0,000,000원)을 시설회계 후원금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지적사례(상세)

- “□□□□복지재단”에서는 [표 1]과 같이 2016년도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이사회 회의비 등)로 총 13건, 1,316,801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 “○○○○요양원”에서는 [표 1, 2]와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09월 조사일 현재까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직원 명절선물 구입, 경조사비, 사회복지업무수당 초과금액 등)로 총 84건, 11,845,01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 “△△△△복지센터”에서는 [표 1]과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직원 명절선물 구입 등)로 총 2건, 2,147,00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표 1]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사용내역

(단위: 원)

기관	연번	관	항	목	연월일	지출내역	지출금액(원)
□□□□ 복지재단	1	사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2016.02.15.	1차 이사회 일비, 교통비	119,600
	~ 중략 ~						
	13	사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2016.05.20.	2차 이사회 일비, 교통비	35,501
소 계 (13건)						1,316,801	
○○○○ 요양원	1	사업비	기타사업비	자원봉사사업비	2016.02.02.	자원봉사자 명절선물구입비	750,000
	~ 중략 ~						
	14	사무비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2019.04.09.	직원경조사비(○○○자녀출산)	100,000
소 계 (14건)						3,795,010	
△△△△ 복지센터	1	사무비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2016.09.09.	종사자 명절(추석) 선물 구입	1,026,000
	2	사무비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2017.01.24.	직원 설 명절 선물 구입	1,121,000
	소 계 (2건)						2,147,000

[표 2] 비지정후원금(사회복지업무수당) 부적정 사용내역

(단위: 원)

시설명	성명 (직책 등)	기간	지급 월수(A)	직책보조비 (직책수당) 월지급액(B)	공무원 사회복지 업무수당 월지급액(C)	직책수당 월 초과지급액 (D=B-C)	직책수당 초과지급 총액 (E=A*D)
총계			70				8,050,000
○○○○ 요양원	조** (시설장)	2016년	3	300,000	100,000	200,000	600,000
		~ 중략 ~					
		2019년	6	300,000	100,000	200,000	1,200,000
	~ 중략 ~						
	박** (사무원)	2016년	3	150,000	100,000	50,000	150,000
		~ 중략 ~					
	2019년	6	150,000	100,000	50,000	300,000	

[유사사례 1] 비지정후원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세입처리 후 간접비를 목적 외 사용

- “☆☆☆자활센터”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법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받으면서 법인전입금(일반)으로 잘못 세입처리하여 [표]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총 33건,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표] ☆☆☆자활센터 비지정후원금 사용 부적정 내역

(단위: 원)

연번	계정항목			지출 일자	지출내역			
	관	항	목		금액	적요	자금 원천	
합계				33건	*,***,***			
1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2016.01.13.	89,000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법인 전입금 (비지정 후원금)	
2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2016.01.13.	50,000	참여자 경조사비		
~ 중략 ~								
21	사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2018.04.12.	450,000	1분기 직책보조비		
33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2017.10.16.	136,000	고용보험 과태료 납부		

처분내용

- (시정) “☆☆☆자활센터”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비지정후원금 총 5,569,000원을 시설회계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바람

[유사사례 2]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직책수당 부적정 사용

- “★★★★★시설”에서는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되지 않아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1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2017. 01월부터 2018. 10월까지 [표]와 같이 4,400천원의 비지정후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비지정후원금 직책수당 지급내역

(단위: 원)

성명 (직책)	수당 명	지급단가	지급 연도	지급기간	지급액	적정 ¹⁾ 지급액	부적정 지급액
계				1년10월	6,600,000	2,200,000	4,400,000
*** (시설장)	복지 수당	월 300,000원	2017	1월~12월	3,600,000	1,200,000	2,400,000
			2018	1월~10월	3,000,000	1,000,000	2,000,000

* 1) 적정 지급액 :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00천원*개월 수)

처분내용

- **(시정)**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업무수당에 대해 “★★★★★시설”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초과 지급한 0,000,000원을 환수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며, 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위와 같은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04 후원금 운영 부적정

사례요약



후원금 관리 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통보, 공개 시 개인정보 공개 등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사례임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해야 함
 - * 후원금전용계좌로 받은 때에는 후원자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 가능
 -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제19조 및 제20조(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고,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처분내용

- (시정)☆☆☆요양원, “△△△복지센터”에서 후원금 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그 사용 내역이 누락됨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 및 후원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후원금 수입·사용 내용 공개 시 후원자의 성명, 법인·단체명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며, 관할 지역 내 위와 같은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지적사례(상세)

- “□□□□재단”에서는 [표 1]과 같이 2018년에는 정상적으로 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도에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표 1]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자체 홈페이지 공개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단”	미공개	미공개	공개
~ 중략 ~			
“△△△복지센터”	공개	공개	공개

- “□□□□재단” 및 산하시설에서는 [표 2]와 같이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규정서식이 아닌 자체 임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표 2]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운영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단”	규정양식 미사용	규정양식 미사용	규정양식 미사용
~ 중략 ~			
“△△△복지센터”	규정양식 미사용	규정양식 미사용	규정양식 미사용

- 또한, [표 3]과 같이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후원자에게 통보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재단” 및 “△△△복지센터”에서는 일부 누락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센터”에서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

[표 3]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후원자에게 통보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후원금 수입건수	사용내용 통보건수	후원금 수입건수	사용내용 통보건수	후원금 수입건수	사용내용 통보건수
□□□□재단	2	-	6	5	77	9
~ 중략 ~						
△△△ 복지센터	182	-	303	-	373	-

- 아울러, 후원금 수입·사용 내용 공개 시에는 후원자의 성명, 법인·단체명 등을 공개할 수 없으나, [표 4]와 같이 “☆☆☆요양원”에서는 2016년과 2017년도에 총 443건에 대하여 후원자의 성명, 법인·단체명 등을 공개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후원금 수입·사용 내용 공개 시 개인정보 공개 현황

기관명	구 분	연도별(건수)			
		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요양원	합계	443	210	233	-
	개인 실명	408	192	216	-
	기업 및 단체실명	35	18	17	-

[유사사례] 후원금 관리 부적정 및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목적 외 사용

- “사회복지법인 □□□□”과 산하 3개 시설에 대하여 [표]와 같이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 “☆☆☆복지원”, “◎◎◎보육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사용하면서 각각 규정 서식이 아닌 자체서식으로 사용하였다.

[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규정서식 미준수 현황

기관명	2014		2015		2016		2017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 중략 ~								
**** 복지센터		○		○		○	○	

- “△△△복지센터”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 ‘△△△ 건설’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10대를 후원받았으나,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비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 “◎◎◎보육원”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비지정후원금을 운영하면서 2014.10.28. 직원 야유회 식대로 202,000원, 2016.01.29. 직원 회식비로 96,000원을 지출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원 야유회비 및 회식비, 후원자 결혼 축의금 등으로 총 20건 계 2,420,400원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처분내용

- **(주의)** “사회복지법인 □□□□”, “☆☆☆복지원”, “◎◎◎보육원”, “△△△복지센터”에서 규정서식에 따른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사용하도록 주의 조치
- **(주의)** “△△△복지센터”에서 후원받은 컴퓨터 모니터 10대를 ‘후원물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주의 조치
- **(시정)** “◎◎◎보육원”에서 목적 외로 사용한 비지정후원금 2,420,400원을 시설회계 후원금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 **(행정처분)** 아울러,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V

기능보강사업

1. 2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2.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증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3.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4. 중요재산(체험홀) 승인없이 무단 용도 변경
5. 기능보강(개보수)사업비 목적 외 사용

01 2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사례요약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어린이집을 증·개축하면서 종합 공사(건축)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 전기공사 계약금액이 8천만원 이상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 등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처분내용

- (시정) “***어린이집”에서 2018년도 증·개축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체결 한 경우 및 금전상의 손실 여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필요 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2개월 내 회신
- (행정처분) “위”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건축공사는 추정금액(767,766천원)이 2억 이상, 전기공사는 추정금액(111,907천원)이 8천만원 이상으로 경쟁에 의한 일반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의 계약으로 집행하였음

[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증·개축) 내역

(단위: 천 원)

공정별	추정금액(신청액)			계약금액			집행금액			계약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826,487	349,558	476,929	827,244	349,558	477,686	826,214	349,558	476,856		
건축	767,756	212,652	555,104	537,000	212,652	324,348	537,000	212,652	324,348	수의	
전기	111,907	26,136	85,771	66,000	26,136	39,864	66,000	26,136	39,864	수의	
소방	45,969	10,245	35,724	26,900	10,245	16,655	25,870	10,245	15,625	수의	
통신	13,838	2,178	11,660	5,500	2,178	3,322	5,500	2,178	3,322	수의	
철거	계	69,481	50,000	19,481	69,488	50,000	19,488	69,488	50,000	19,488	
	1	21,858	8,208	13,650	11,400	8,208	3,192	11,400	8,208	3,192	수의
	2	19,020	10,692	8,328	14,850	10,692	4,158	14,850	10,692	4,158	수의
	3	28,603	14,040	14,563	19,500	14,040	5,460	19,500	14,040	5,460	수의
	4	8,738	6,260	2,478	8,738	6,260	2,478	8,738	6,260	2,478	수의
	5	15,000	10,800	4,200	15,000	10,800	4,200	15,000	10,800	4,200	수의
자재	128,444	48,377	80,067	122,356	48,377	73,978	122,356	48,377	73,978	사급	

※ 철거: 1. 석면철거 / 2. 건축물 철거용역 / 3. 건설폐기물처리 / 4. 놀이터 설치 전 부지정리 / 5. 놀이터 재설치

02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증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사례요약



기능보강 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고,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이행각서 또한 징구하지 않은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등

처분내용

- (주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 “사회복지시설 □□□□ 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이행각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할 경우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철저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시설 □□□□원”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한 3천만원 이하 기능보강사업 중 [표 1]과 같이 ‘면회실 보수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표 2]와 같이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등 8개 공사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현재까지 단 한번도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1] 사회복지시설 □□□□원 하자보증 이행각서 미징구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집행내역			착공일	준공일	하자보증서 (이행각서) 구비 여부
		계	보조금	자부담			
2016년	면회실 보수공사	11,000	9,652	1,348	2016.11.01.	2016.11.20.	부
2017년	민원실 환경개선	6,754	5,637	1,117	2017.10.23.	2017.10.27.	부
2018년	캐노피 설치	4,510	3,973	537	2018.10.25.	2018.10.31.	부

[표 2] 사회복지시설 □□□□원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집행내역			착공일	준공일	하자검사 실시여부	
		계	보조금	자부담			실시	미실시
2016년	장판교체	43,679	39,311	4,368	2016.06.20.	2016.07.09.		○
2016년	냉난방기 구매설치	63,659	57,347	6,312	2016.08.05.	2016.10.04.		○
2016년	식당 기자재	32,750	29,475	3,275	2016.08.19.	2016.08.31.		○
2016년	면회실 보수공사	11,000	9,652	1,348	2016.11.01.	2016.11.20.		○
2017년	LED투광 조명 설치	47,589	43,263	4,326	2017.07.24.	2017.08.23.		○
2017년	민원실 환경개선	6,754	5,637	1,117	2017.10.23.	2017.10.27.		○
2018년	식당 출입문교체	29,685	26,717	2,968	2018.07.10.	2018.08.14.		○
2018년	캐노피 설치	4,510	3,973	537	2018.10.25.	2018.10.31.		○

03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사례요약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사후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입된 일자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등 사후정산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시설 *****집”에서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분야에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총 1,428,318원에 대하여 군비(39.6%)·자부담(60.4%)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565,610원 국고 환수 및 시설회계로 862,708원을 반환 조치하도록 요구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집”에서는 기능보강사업(증·개축)을 실시하고, 공사대가 지급 시 노무비에 대한 법정 제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모두 확인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표 1] 및 [표 2]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총 1,428,318원을 공사대금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1] 전기분야 제경비 지급내역

(단위: 원)

구분	정산금액	납부확인	과다지급액	비고
산재보험료	1,027,546	○	-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고용보험료	220,732	○	-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국민건강보험료	403,098	X	403,098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국민연금보험료	590,421	X	590,421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402	X	26,402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9,660	○	-	
부가가치세	-	-	101,992	
계	2,997,859	-	1,121,913	

[표 2] 통신분야 제경비 지급내역

(단위: 원)

구분	정산금액	납부확인	과다지급액	비고
산재보험료	109,958	○	-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고용보험료	23,620	○	-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국민건강보험료	110,090	X	110,090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국민연금보험료	161,250	X	161,250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10	X	7,210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부가가치세			27,855	
계	412,128		306,405	

[유사사례] 기능보강사업 공사 미시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미실시

-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2016.06.07. 부터 2016.09.30. 까지 시행한 기능보강사업(증축 공사)을 하면서 방수, 토목, 소방, 전기 등 분야별 7건의 세부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일(2016.09.30.) 이후부터 조사일인 2018.07.13. 현재까지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표]와 같이 금속공사 일환인 종합안내촉지도도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것으로 준공 처리 후 공사비 1,272,897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

[표] 기능보강사업 공사 미시공 내역

(단위 : 원)

구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액				미시공 공사 내역			
	업체명	미준수	금액	비고	공종	금액	반납액	비고
*** 증축 공사	(주)***설	2016.09.30.	308,660,000	건축, 기계 설비 공사	금속공사 (촉지도 설치)	1,272,897	1,461,290*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미설치

* 1) 1,461,290원 = 미시공액(1,272,897원) + 127,289원(부가가치세=미시공액의 10%) + 61,100원(일반관리비=미시공액의 4.8%)

처분내용

- **(주의)** “사회복지시설 □□□□”에서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 **(시정, 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 □□□□”에서 시공되지 않은 촉지도 미설치 공사비(1,272,897원)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총 1,461,290원(보조금)을 국고 환수 및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

04 중요재산(체험홈) 승인없이 무단 용도 변경

사례요약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에서 자립생활 체험홈 목적의 기능보강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아파트)을 주무관청 승인없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용도 변경하여 무단 사용한 사례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제1항 제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시설 □□□□”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 체험홈’ 아파트의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조속히 이행 요구

자적사례(상세)

-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표]와 같이 2010.12.22.에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장소 마련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125,000천원: 국비+지방비+자부담)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시 **동 제일A***동 1**2호)에서 2011.04.01.부터 2016.06.18.까지 ‘*** 자립생활체험홈(1호)’을 운영하다가 2016.06.19.부터 위 아파트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동시에 ***도 ***시 ***동 **A**동 *0*호(기 ‘***’ 소재)로 ‘*** 자립생활체험홈(1호)’을 주무관청 승인없이 이동하여 운영중에 있는 바,
- 교부받은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아파트)을 기능보강사업 목적인 자립생활 체험홈 용도에 맞게 관리·운영되어야 함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운영하였다.

[표] 자립생활체험홈 운영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완료 (2011.03.03.)	소재지	사용용도	사용기간
*** 체험홈	총 125,000 (국비 50,000 도비 25,000 시비 25,000, 자부담 25,000)	아파트 구입 : 108,000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 17,000	****동 **A ***동1*02호 (구입일자: 2010.12.22.)	*** 체험홈	2011.04.01.~2016.06.18. 까지 체험홈 운영 *2016.06.18.입소자 4명
				**** (공동 생활가정)	2016.06.19.부터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 운영 *기능보강사업 목적 변경 미승인

* ‘*** 자립생활체험홈’은 ***동 **A ***동 *01호(기 *** 장소)로 무단 이동

05 기능보강(개보수)사업비 목적 외 사용

사례요약



장애인거주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동일 건물 내의 장애인시설 용도가 아닌 법인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카페(휴게음식점)에 기능보강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의 환수)

- 제1항 제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등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시설 □□□□원”에서 2016년 보조금으로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 공사비(보조금) 6,270,530원을 환수 조치 요구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시설 □□□□원”에서는 [표 1]과 같이 2016년 11월경에 개보수공사인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표 1] 사회복지시설 □□□□원 기능보강사업 준공계 현황

(단위: 원)

공사명	공사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지붕방수, 창호교체	(주)*****	289,643,000	2016.07.05.	2016.07.10.	2016.11.07.

- 위 총 공사비 289,643,000원 중에는 본 “□□□□원”의 일부 시설인 “**의집”(291.96㎡)의 공사비가 [표 2]와 같이 26,513,884원이 포함되어 있다.
- “**의집” 1층의 일부인 58.37㎡는 2014.04.17. **군수로부터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받았고, 역시 “**의집” 1층 중 일부인 69.04㎡는 2015.12.16.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2016.03.17.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정관(2018.06.18. 6차 개정) 제31조 제1항에는 수익사업으로 “**의집” 카페를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 “**의집” 1층 휴게음식점(카페) 69.04㎡는 장애인거주시설 용도가 아닌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익 사업 용도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따라서 “**의집” 전체면적(291.96㎡)의 1층 휴게음식점(69.04㎡)의 면적이 23.65%인 점을 감안할 때 [표 2]와 같이 기능보강사업비 26,513,884원 중 6,270,530원이 부당하게 과다 집행되었다.

[표 2] **의집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원)

세부공사 구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내역				과다집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A)	면적비율 (B)	금액 (C=AxB)
	19,458,185	7,055,201	498	26,513,884	23.65%	6,270,530
방수공사	1,941,708	2,783,700		4,725,408		
창호공사	15,088,490	193,038	498	15,282,026		
유리공사	1,442,067	526,650		1,968,717		
수장공사	985,920	3,286,560		4,272,480		
기타공사	0	265,253		264,253		

VI

참고서식

본 서식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예시로 한 것임

조사대상기관(법인 및 시설) 유형, 조사시점, 국비보조금 지방이양,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규정 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서식을 활용할 때, 서식의 항목이나 산정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번호	서식 제목	페이지
1	조사명령서	124
2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125
3	확인서	126
4	사실확인서	127
5	질문서	128
6	답변서	129
7	문답서	130
8	요약보고서	131
9	통보서	132
10	토지 정기과세 명세서	133
11	일반건축물 정기과세 명세서	133
12	정관의 기본재산 등재 누락 명세	134
13	법인 기본재산 처분 대금 부당사용 명세	134
14	법인 현금성 기본재산(임차보증금) 관리 부적정 현황	135
15	법인 기본재산 임대 수익사업 회계처리 명세	135
16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136
17	법인 감사 선임 현황	137
18	법인 3회계연도 세입결산 명세	137
19	법인 임원(이사) 임면보고 현황	138
20	법인 이사회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공개 현황	138
21	법인 이사회 회의 미참석자 회의수당 지급 명세	139
22	법인카드 차량 주유비 지출 명세	139
23	시설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현황	140
24	시설입소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및 처리 명세	140
2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명세	141
26	퇴직적립금 횡령 및 다른 용도 사용 명세	141
27	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	142
28	연가 초과사용 및 인건비 과다지급 명세	142
29	국내·외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명세	143
30	퇴직자 명단 및 퇴직 연령 현황	143
31	인건비(보조금) 지급상한기준 초과자 인건비 과다지급 명세	144
32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처리 불이행 명세	144
33	무자격 종사자 인건비(보조금) 부당지급 명세	145

번호	서식 제목	페이지
34	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 수령 명세	145
35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건비(보조금) 과다지급 명세(A)	146
36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건비(보조금) 과다지급 세부명세(B)	146
37	허위 종사자 인건비 횡령 명세	147
38	허위 종사자 인건비(보조금) 횡령 명세	147
39	시설장 공공요금 사적사용 현황	148
40	직원 식대 수입 및 지출 현황(A)	148
41	시설 생계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 명세(B)	149
42	시설 생계비(보조금) 목적 외 사용 명세	149
43	시설 퇴소자 시설생계비 허위 청구 명세	150
44	후원금 전용계좌에 다른 자금 혼용 사용 명세	151
45	후원금 영수증발급대장 및 회계처리 운영현황	151
46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현황	152
4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시 후원자 공개 현황	152
48	후원금 과다 적립 및 이월 현황	153
49	비지정후원금 목적 외 사용 명세	153
50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업무수당(직책수당) 초과지급 명세	154
51	후원물품 후원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명세	154
52	후원금 부당사용 명세	155
53	입소자 입소보증금 미반환 명세	156
54	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 현황(A)	156
55	시설 종사자 개인별 범죄경력 조회 실시 명세(B)	157
56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횡령 등 부당 사용 명세	157
57	선금금 집행 시 증빙자료 미첨부 현황	158
58	퇴소아동 개인금전(생계비) 잔액지분액 미반환 명세	158
59	시설입소자 허위등록 및 보조금 부당수령 명세(A)	159
60	시설입소자 허위등록 및 보조금 부당수령 세부명세(B)	159
61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 허위참여자 인건비 지급현황	160
62	시설 증축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현황	160
63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횡령 명세	161
64	노인급식사업비 목적 외 부당사용 명세	161
65	시설별 주요 식자재 계약 및 거래 명세	162
66	시설 운영비 선결제 등 집행절차 부적정 명세	162

[서식 1]

조 사 명 령 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자의 관계서류 검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사대상기관:

※ 필요시 현장에서 조사대상 시설 추가 가능

2. 조사기간: 2020. ○. ○.(월) ~ ○. ○.(금) * 필요시 기간 연장

3. 조 사 자: 보건복지부 조사관 ○명

※ 필요시 조사인원 추가 투입

4. 조사범위와 내용

- 법인·시설운영, 종사자관리, 회계관리, 후원금관리, 기능보강 등
법인 및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조사대상기간 : 2017년 1월 ~ 2020년 조사일 현재

※ 조사과정 중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부당한 사안 등이 확인되어 해당 건
그 이전기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기간 확대

6. 제출(검사)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2020. ○. ○.

보건복지부장관

[서식 2]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조사대상 기관	
대표이사 성명	
주소	
대상기간	
제출 하여야 할 서류	<p>가. 법인의 비치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임원명부, 재산목록, 회의록(총회, 이사회 등), 당해 회계연도 사업 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예산서, 결산서),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자산 및 회계 관련 증빙서류 등 <p>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시설평면도)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 <p style="margin-left: 20px;">※ 개별법령에서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서류 비치(시설에서 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p> <p>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관련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결산서(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인건비·사업비 명세서) - 총계정원장, 시설운용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이용 내역서(월별), 운영위원회(회의록 포함) -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직원 급여명세서, 채용관련 서류(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서류 -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화재보험, 책임보험 가입증서 등 - 성범죄경력조회 서류(해당시설에 한함) <p>라. 기타 필요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대장 (외박 및 외출대장 등), 각종 서류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위와 같이	<p>사회복지시설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p> <p>요구자 : (서명 또는 인)</p> <p>수령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보건복지부장관</p>
	<p>※ 자료 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 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p>

[서식 3]

확 인 서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재단)

제 목 :

내 용

○ (관계 법령 등)

○ (위법부당 등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인자 : 소속	직(기관장)	성명	(인)
	사무국장 등	성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4]

사 실 확 인 서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재단)

□ 제 목 :

□ 내 용

○ (확인한 사실 내용 기재)

※ 종사자, 입소자, 거래처 직원 등으로부터 확인한 사실 내용을 기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서식 설명

- 위 '사실확인서'는 다음 사례 등에 대하여 기관장 등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기 전에 종사자, 입소자 등 관련자로부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 활용함
 - (사례 ①)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경우
 - ☞ 시설장이 영수증을 주면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라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그 사실 관계를 확인
 - (사례 ②)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 ☞ 통장에서는 지출내역이 있으나 지출결의서가 없을 때 그 사실 관계를 확인
 - (사례 ③) 입증할 자료가 있으나 사실과 내용이 다른 경우
 - ☞ 지출결의서와 첨부 서류 등은 있으나 실제 구입 물량 등이 달라서 그 사실 관계를 확인
 - (사례 ④) 허위 종사자가 있는 경우
 - ☞ 허위 종사자 여부를 확인할 때 다른 종사원이나 입소자 등으로부터 그 사실 관계를 확인
 - (사례 ⑤) 원인행위 등의 관련자들이 퇴직한 경우
 - ☞ 부당 지출행위자, 부당한 급여 수령자 등이 퇴직하여 현직에 있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그 사실 관계를 확인

[서식 5]

질문서

발부번호	제 호
제 목:	
질문사항	
2020년 월 일	
귀하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 관련하여 ○	
2. ...과 관련하여 ○	
3. ...과 관련하여 ○	

※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보건복지부 감사관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7]

문 답 서	
주 소	
소 속	
직위 및 직명	
성 명	
생 년 월 일	
위의 자는	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와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또는 낭독)하게 하였더니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서명(또는 날인)하게 하다.	
진 술 인 (인)	
20 년 월 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인)	
입 회 인 (인)	

보 건 복 지 부

[서식 8]

사회복지법인 ○○○○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요약

(“20. . ○. 조사○팀)

1 조사 개요

- 대상기관:
- 조사기간:
- 조사○팀(○명):
- 주요 점검내용

2 법인·시설 현황

- 일반 현황 (2020.○.○. 기준, 단위: 명)

법인·시설명	설립일	입소자		종사자 인원		규모 (건물 연면적)
		정원	현원	인원	대표·시설장	

* 제출자료: 법인설립등기 및 허가증, 각 시설별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시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 제출자료: 법인 및 시설 해당 연도별 결산자료
- (작성) 세입 된 보조금 전체를 합산하여 작성

3 조사 결과

〈단위: 건, 천 원〉

지적 사항	조치 사항								
	계	환수 및 반환			과태료	행정처분	고발	시정	주의
		소계	환수	회계간반환					

4 세부 조사내용

-

[서식 9] ※ 복지부에서 시도·시군구로 처분요구 통보서

보 건 복 지 부 통 보

제 목 :

시 도 기 관 :

관 계 기 관 :

내 용

1.

2.

3.

조치할 사항

○○시도지사는

1. ○○

2. ○○

3. ○○

○○시도 ○○시군구청장은

1. ○○

2. ○○

3. ○○

[서식 10]

()년도 토지 ()년도분) 정기과세 명세서

□ 행정동 :

출력일자: 2020.00.00.
출력시간: 00: 00:

과세번호	납세의무자		물건소재지		토지내역			토지형태			취득일자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토지)			
	납세자	납세자번호	토지소재지	본법-분반 동-호수	사적의무	지목		공시지가	대분류	소분류	전년공시지가	현년공시지가	코드	교육세액	과표	현년세액	과표	현년세액
						공부	현황											
000 000	사회복지법인 ○○○																	

[서식 11]

()년도 월 일반건축물 ()년도분) 정기과세 명세서

□ 자치단체명 :

출력일자: 2020.00.00.
출력시간: 00: 00:

과세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의무자명		주소				과세물건			
행정동	건물소유자번호	용도코드-지수	소유비율	연면적	지하차고	재산코드	재산과표	상당재산세액	재산세액	상한재산세액	
건물소유주명	구조코드-지수	외국비율	전용면적	지상차고	도시지역코드	시설물과표	상당시설물세액	시설물세액	상한시설물세액		
물건지주소	위치코드-지수	재산세액비율	공유면적	무벽차고	지역자원코드	도시지역분과표	상당도시지역분세액	도시지역분세액	상한도시지역분세액		
동-층-호	지붕-잔가울	도시지역세액비율	지하면적	감가율	건물시가	지역자원과표	상당지역자원시설세액	지역자원시설세액	상한지역자원시설세액		
건축년도	주식소유비율	㎡당 가액	지역자원세액비율	지하대피소	취득일	총건물시가	총지역자원과표	상당지방교육세액	지방교육세액	상한지방교육세액	
구분	비고		건물높이	증개축일자	기준시가	상당액정보	상당세액계	재산세액계	상한세액계		
사회복지법인 ○○○											

※ 표 설명

○ 【서식 10, 11】은 법인 담당자가 해당 시군구 재무과 또는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해당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

[서식 12]

정관의 기본재산 등재 누락 명세

□ 적용기간: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평가액	등기일	취득일	정관 등재	
							여	부
합 계		5 건		950,520				5건
〈취득보고 이행: 2건〉								
1	토지 (대지)	○○시도 ○○구 ○○동 ☆☆☆번지	4,100	100,100	'16.00.00.	'16.00.00.		○
2	건물	○○시도 ○○구 ○○동 ★★번지	80	200,100	'15.00.00.	'15.00.00.		○
소 계		2 건		300,200				2건
〈취득보고 미이행: 3건〉								
1	토지 (답)	○○시도 ○○구 ○○동 ◎◎번지	2,000	150,120	'14.00.00.	'14.00.00 .		○
2	건물	○○시도 ○○구 ○○동 ◇◇번지	150	200,100	'15.00.00.	'15.00.00 .		○
3	건물	○○시도 ○○구 ○○동 ◆◆번지	120	300,100	'14.00.00.	'14.00.00 .		○
소 계		3 건		650,320				3건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정관(기본재산 목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식 13]

사회복지법인 ◎◎재단 기본재산 처분 대금 부당사용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부당 출금(A)		법인비용 지출(B)			부당사용 금액 ¹⁾ (C=A-B)
	일자	출금액	일자	지출액	사용처	
합 계		90,000,000		74,000,000		16,000,000
1	2010.11.17.	40,000,000	2010.11.17.	3,000,000	법인 산하 ♡♡시설의 준공행사비	
2			2010.12.4.	31,000,000	법인 산하 ♡♡시설 전출비	
3	2010.12.30.	9,000,000	2011.1.4.	5,000,000	법인 산하 ♡♡시설 전출비	
4	2011.7.14.	41,000,000	2011.7.15.	35,000,000	기능보강사업 법인 자부담 비용	

주: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보상 관련 서류, 기본재산처분 허가 서류, 사용처 관련 지출결의서, 시설장 개인통장사본, 사실조사서 등

* 표 설명

○ ◎◎재단은 ○○관리청으로부터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금에 대하여 관할 시도로부터 기능보강사업 자부담 비용, 재산세 납부비용 등 정해진 법인 운영비로만 사용하도록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음에도 법인 운영비 외 사적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서식 14]

법인 현금성 기본재산(임차보증금) 관리 부적정 현황

(금액단위: 천원)

임차인	임차내역			임대인	이사회 결의		재산취득 보고		정관 기본재산 등재	
	물건(면적)	기간	보증금		여	부	여	부	여	부
합 계	2 건					2건		2건		2건
사회복지법인 △△재단	▣▣의집 (330㎡)	'17.1.1.~ '19.12.31.	70,000	춘삼월		○		○		○
	●●하우스 (290㎡)	'17.3.1~ '19.2.28.	60,000	동장군		○		○		○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법인 이사회 회의 통보 문서, 이사회 회의록

[서식 15]

사회복지법인 △△재단 기본재산 임대 수익사업 회계처리 명세

(단위: 천원)

연도별	연간 임대 총 수입금액	법인 수익사업 회계 처리		법인 일반회계 처리	
		여	부	여	부
계	86,800				
2017년	20,150		○	○	
2018년	26,200		○	○	
2019년	27,000		○	○	
2020년 1월~2월	13,450		○	○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표 설명

-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법인에서 임대수익사업을 하면서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처리함

[서식 16]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 목			세출예산액 (A)	세출결산액 (B)	초과집행액 (C=B-A)
	관	항	목			
[기관명: 사회복지법인 ☆☆재단]						
합계	4 건			6,500	711,900	705,400
2015년	소계: 3 건			3,500	690,900	687,4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3,000	319,000	316,0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500	368,000	367,500
	예비비기타	예비비기타	반환금	0	3,900	3,900
2017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비	3,000	21,000	18,000
[기관명: ◎◎◎센터]						
합계	11 건			153,900	645,900	492,000
2016년	소계: 6건			79,800	525,800	446,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5,000	220,000	215,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장비유지비	1,000	171,000	170,000
	사업비	운영비	피복비	33,000	63,000	30,000
	사업비	운영비	연료비	10,000	17,000	7,000
	사업비	사업비	심리재활비	30,000	39,000	9,0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800	15,800	15,000
2017년	소계: 5 건			74,100	120,100	46,000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수수료	14,000	26,000	12,000
	사업비	운영비	피복비	38,000	60,000	22,000
	사업비	운영비	연료비	17,000	20,000	3,000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0	5,000	5,000
	사업비	사업비	환경개선비	5,100	9,100	4,000

* 근거 :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표 설명

- 사회복지법인 ☆☆재단은 2015년 3건, 2017 1건 등 총 4건의 과목에서 세출예산액을 초과하여 총 7억 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산하 시설인 ◎◎◎센터에서는 2016년 6건, 2017 5건 등 총 11건의 과목에서 세출예산액을 초과하여 총 4.9억 원을 초과 집행함

[서식 17]

사회복지법인 ◎◎재단 감사 선임 현황(A)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근무처		비고
				소속	직업	
감사	△△△	1983.11.22	2017.07.01.~2019.06.30.	법무법인 (유) △△△	변호사	2017.11.27. 사임
	○○○	1964.04.21	2017.11.27.~2019.11.26.	○○○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
감사	□□□	1969.08.15	2016.04.05.~2018.04.04.	(주) △△△화학	대표 이사	2018.04.04. 임기만료
	홍길동	1974.02.08	2018.04.05.~2020.04.04.	특허법인 ☆☆☆	변리사	2018.04.05. 선임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서식 18]

사회복지법인 ◎◎재단 3회계연도 세입결산 명세(B)

(금액단위: 천원)

기관명	2015년 (A)	2016년 (B)	2017년 (C)	3회계연도 세입결산		참고 (2018년)
				계 (D=A+B+C)	평균액 (D/3)	
합계	7,500,000	8,000,000	8,500,000	24,000,000	8,000,000	8,500,000
사회복지법인 ○○원	2,000,000	2,100,000	2,200,000	6,300,000	2,100,000	2,300,000
○○원	1,100,000	1,200,000	1,300,000	3,600,000	1,200,000	1,300,000
○○센터	2,200,000	2,300,000	2,400,000	6,900,000	2,300,000	2,300,000
○○마을	1,200,000	1,300,000	1,400,000	3,900,000	1,300,000	1,300,000
○○재활원	1,000,000	1,100,000	1,200,000	3,300,000	1,100,000	1,300,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기관별 3회계연도 세입결산서

[서식 19]

사회복지법인 △△△ 임원(이사) 임면보고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전 임	현 임	임면보고	
					여	부
1	대표이사	홍○○	2015.04.22.~2018.04.21.	2018.04.22.~2021.04.21. (연임)		○
2	이사	△△△	2015.04.22.~2018.04.21.	2018.04.22.~2021.04.21. (연임)		○
3	이사	△△△	2015.04.22.~2018.04.21.	-		
4	이사	△△△	2015.04.22.~2018.04.21.	2018.04.22.~2021.04.21. (연임)		○
5	이사	△△△	2015.04.22.~2018.04.21.	-		
6	이사	△△△	2015.04.22.~2018.04.21.	2018.04.22.~2021.04.21. (연임)		○
7	이사	△△△	-	2018.04.22.~2021.04.21. (선임)		○
8	사외이사	△△△	2015.04.22.~2018.04.21.	-		
9	사외이사	△△△	2015.04.22.~2018.04.21.	-		
10	사외이사	△△△	-	2018.04.22.~2021.04.21. (선임)		○
11	사외이사	△△△	-	2018.04.22.~2021.04.21. (선임)		○
계			8명	7명		7명

주) 2018년 정기 이사회 심의의결: 2018. 02. 27.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서식 20]

법인 이사회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공개 현황

(단위: 일)

연번	법인명	이사회 회의			회의 전 소집통지 기간	회의록공개			
		소집 통지일	통지 방식	회의일자		법인		도	
						홈페이지	홈페이지	여	부
합계				5 건		5 건		5 건	
1	사회복지법인 ○○재단	2015.02.02.	등기	2015.02.06.	3		부		부
2		2015.03.09.	등기	2015.03.13.	3		부		부
3		2015.04.13.	등기	2015.04.17.	3		부		부
4		2015.05.18.	등기	2015.05.22.	3		부		부
5		2015.06.09.	등기	2015.06.15.	5		부		부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법인 이사회 회의 통보 문서,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내역 등

[서식 21]

법인 이사회 회의 미참석자 회의수당 지급 명세

(단위: 명, 원)

연번	연도	회의 시기	회의일자	참석 인원 내역			미참석자 회의수당 지급내역		비고
				계	참석	미참석	성명	지급액	
합 계							8 건	800,000	
1	2012년	1회차	2012.3.2.	8	7	1	홍길동	100,000	
2	2012년	3회차	2012.8.25.	8	6	2	변사또	100,000	
							임격정	100,000	
3	2013년	4회차	2013.6.30.	8	7	1	홍길동	100,000	
4	2013년	6회차	2013.8.26.	8	6	2	변사또	100,000	
							일지매	-	
5	2014년	5회차	2014.5.6.	8	7	1	성춘향	100,000	
6	2015년	2회차	2015.7.25.	8	6	2	일지매	100,000	
							이도령	100,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법인 이사회 회의 등록부, 회의수당 지급결의서, 이사회 회의록 등

[서식 22]

법인카드 차량 주유비 지출 명세

(금액단위: 원)

번호	기관명	승인일자	법인카드 가맹점명	출장명령		차량주유비 지출액
				여	부	
합 계			3 건			541,000
1	사회복지 법인 ○○ 재단	20130220	SK○○주유소		○	121,000
2		20130513	주식회사보현에너지○○주유소		○	113,000
3		20130609	SK네트웍스(주)SK○○주유소		○	106,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카드 승인내역, 출장명령부, 지출결의서 등

[서식 23]

시설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기관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개최	미개최	개최	미개최	개최	미개최	개최	미개최
합 계		5	3	7	1	5	3	17	7
A 마을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4분기		
	소계	3	1	3	1	2	2	8	4
B 일터	분기별	2분기 3분기	1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3분기 4분기	2분기		
	소계	2	2	4	-	3	1	9	3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기관별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문서, 회의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

[서식 24]

시설입소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및 처리 명세

(금액단위: 원)

기관명	사망자 및 입소구분				유류금품 관리 및 처리			
	성명	사망일	실비 입소 자	기초 수급 자	소유자 명	통 장 계좌번호	잔 액	처리 상태
○○ 복지원	합 계				2건		4,200,000	
	홍길동	2015. 10. 25.		○	홍길동	농협 000-000- 00000	1,700,000	시설에서 잡수입으로 처리(2015.11.1.)
	성춘향	2016. 10.21.	○		성춘향	국민 000-000- 00000	2,500,000	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통장 보관 중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사망자 명부, 잡수입 통장사본, 개인통장사본 등

[서식 2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명세

(금액단위 : 원)

기관명	성명	입사일	퇴사일	미반납 금액			자금 원천
				소계	적립금	이자	
합계	3명			1,974,000	1,950,000	24,000	보조금
○○원	홍길동	2014.3.20.	2014.11.30.	608,000	600,000	8,000	
○○센터	임격정	2014.2.10.	2014.12.26.	708,500	700,000	8,500	
○○마을	성춘향	2015.4.25.	2015.12.15.	657,500	650,000	7,5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퇴직자 명부, 퇴직적립금 납부 지출결의서,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등

[서식 26]

퇴직적립금 횡령 및 다른 용도 사용 명세

(금액단위: 원)

연도	퇴직적립금 적립내역				퇴직적립금 인출내역			
	금융 기관	상품 명	인 원	적립금액	인출 일자	인출액	사용처	조치 대상
합계				55,394,000		16,911,600		
2014년	○○ 은행	○○	33	12,000,000				
2015년	○○ 은행	○○	33	13,056,000	8.26.	5,949,600	시설장(홍길동) 개인저축보험 납입	환수
					9.15.	1,500,000	용도불명 사용	환수
2016년	○○ 은행	○○	34	13,996,000	5.25.	4,462,000	시설장(홍길동) 개인저축보험 납입	환수
					9.16.	5,000,000	시설 화장실 보수공사비	반환
2017년	○○ 은행	○○	34	14,336,000				
2018년	○○ 은행	○○	34	2,006,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퇴직적립금 지출결의서, 금융기관 퇴직적립금 세부 입금 및 인출내역(별지) 등

* 표 설명

- ○○마을 시설장 홍길동은 적립된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 일부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시설 공사비 등으로 목적 외 지출하거나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함

[서식 27]

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

(금액단위: 원)

기관명	종사자명 (직종)	복무상황		시간외근무 부적정 지급내역			
		유형	기간	근무일시	근무 ¹⁾ 시간 (A)	시간 단가 (B)	지급액 (C=A×B)
○○ 마을	소 계			3 건			197,520
	홍길동 (사무원)	연가	2015.12.17	2015.12.17 18:00~22:00	4	15,930	63,720
		연가	2015.12.18	2015.12.18 19:00~23:00	4	15,930	63,720
	임격정 (지도과장)	해외 출장	2015.07.10 ~07.15	2015.07.10 18:00~21:00	3	17,520	70,080

주: 1)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된 시간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기관별 복무상황(교육, 연가, 출장 등)대장,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내역 등

[서식 28]

연가 초과사용 및 인건비 과다지급 명세

(단위: 일, 원)

기관명 종사자 (직종)	연도	근속 연가 일수	사용 연가 일수	초과 일수	초과일수의 해당 월 및 기본급	인건비 과지급액			비고
						소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484,540	1,303,040	181,500	
○○유평터 홍길동 (시설장)	2013년	17	21	4	11월, 3,323,000	430,640	430,640		인건비 100% 지원
○○ 재활원 성춘향 (간호사)	2014년	18	22	4	12월, 3,513,000	468,400	374,720	93,680	인건비 80% 지원, 20% 자부담
	2015년	18	23	5	11, 12월, 3,513,000	585,500	497,680	87,820	인건비 85% 지원, 15% 자부담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근무상황부(연가 등) 대장, 업무일지 등

[서식 29]

국내외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명세

(단위: 원)

기관명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자(직책)	사적 출장 내용	출장경비	자금원천
합계		5회	3명		3,313,000	
♣♣♣ 보금자리	'13.05.08~05.10	중국	성춘향 (시설장)	▽▽▽ 탄신 50주년 기념사업 참석	1,070,000	보조금
	'13.7.07~7.11	중국	성춘향 (시설장)	제5회 한중 교류 심포지움 참석(국외)	1,296,000	보조금
	'14.3.12~3.13	부산	성춘향(시설장) 외 직원 2명	제8회 한중 교류 심포지움 참석(국내)	487,000	보조금
	'15.10.06	서울	성춘향 (시설장)	서울 ▼▼센터 방문	160,000	자부담
	'16.5.12	강릉	성춘향 (시설장)	중앙시설연합회 참석(점심식대)	300,000	후원금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출장관련문서, 출장신청서, 지출결의서,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 표 설명

- ♣♣♣시설 에서 국내외 출장여비 및 운영비 집행에 있어 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출장목적이 불명확한 국내외 행사 참석을 하면서 보조금과 전입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원장 및 직원들의 출장비 3,313,000원을 집행

[서식 30]

퇴직자 명단 및 퇴직 연령 현황

퇴사자		설립자 와의 관계	생년월일 (A)	입사 일자	퇴사일 (B)	퇴사 시 연령 (C=B-A)
직책	성명					
합계	4명					
시설장	홍길동	무	1960.10.31.	2001.12.3.	2013.12.31.	53년 2개월
사무국장	일지매	자(아들)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 ○개월
간호사	성춘향	무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 ○개월
생활자도원	변사또	무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 ○개월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기관별 인사발령대장, 퇴직 공문, 퇴직자 명단 등

[서식 31]

인건비(보조금) 지급상한기준 초과자 인건비 과다지급 명세

(금액단위: 원)

종사자명 (직책)	생년 월일	입사 일자	인건비 지급상한 기준일	실제 퇴사일	인건비 과다지급 내역		자금 원천
					지급기간	지급액	
합 계 (3명)						53,000,000	
일지매 (사무국장)	1953. 5.15.	2003. 5.1.	2013. 6.30.	2013. 12.31.	2013.7.1. ~12.31.	20,000,000	보조금
선춘향 (간호사)	1954. 9.25.	2001. 9.1.	2014. 12.31.	2015. 6.30.	2015.1.1. ~6.30.	10,000,000	보조금
변사도 (생활지도원)	1952. 3.18.	1993. 4.10.	2012. 6.30.	2012. 12.31.	2012.7.1. ~12.31.	23,000,000	보조금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인사발령대장,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퇴직처리 문서, 인건비 지급내역 등

[서식 32]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처리 불이행 명세

(금액단위: 원)

기관명	카드사	기준일	적립금액	사용 금액	잔액	사용 여부		세입처리 여부	
						여	부	여	부
합 계			3,550,000	200,000	3,350,000				
법인 ○○원	NH농협카드	'15.12.31.	500,000	0	500,000		○		○
	○○ 복지원	NH농협카드	'15.12.31.	800,000	0	800,000		○	
			900,000	0	900,000		○		○
	소계		1,700,000	0	1,700,000				
○○ 요양원	국민카드	'15.12.31.	1,000,000	200,000	800,000		○		○
	NH농협카드	'15.12.31.	350,000	0	350,000		○		○
	소계		1,350,000	200,000	1,150,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카드사 이용대금명세서,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자료 등

[서식 33]

무자격 종사자 인건비(보조금) 부당지급 명세

(금액단위: 원)

성명 (직책)	지급 기간	호 봉	지급내역 ¹⁾							
			기본급	명절 휴 가비	연장근 로수당	특수근 무수당	종사자 처우개 선비	사용자부담금		계
								사회 보험료	퇴직 적립금	
	합계		37,171,420	4,293,850	3,758,780	2,857,130	464,270	3,204,360	3,707,110	55,456,940
홍길동 (사무 국장)	2017. 1.~12.	2	29,737,140	3,435,080	3,007,030	2,285,710	371,420	2,563,510	2,965,600	44,365,580
	2018. 1.~3.	3	7,434,280	858,770	751,750	571,420	92,850	640,870	741,420	11,091,360

주: 1) 기관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한 각종 수당 등을 기재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급여지급대장,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퇴직적립금 적립내역 등

[서식 34]

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 수령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기관명	시설장 성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교부받은 내용	환수대상 인건비 금액	자금원천
합 계			5 건	45,939,480	
1	○○○ 마을	소계		44,189,590	보조금
		홍길동	퇴직한 사회재활교사 ○○○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인건비를 받아 임의 집행	34,472,180	
			생활복지사 ○○○의 출국기간(2009.12.8.~ 2010.8.31.) 중 인건비 수령	6,235,870	
2	홍길동	시설장 ○○○의 출국기간(2011.1.18.~2.15.) 중 인건비 수령	3,481,540		
3		소계	1,749,890		
4	○○○ 의집	성춘향	시설장 ○○○의 출국기간(2011.1.17.~2.27.) 중 인건비 수령	1,217,640	
			5	생활복지사 ○○○의 출국기간(2010.12.25.~ 2011.1.22.) 중 인건비 수령	532,25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부, 출근부, 출입국사실증명서, 급여지급내역, 지출결의서 등

[서식 35]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건비(보조금) 과다지급 명세(A)

(금액단위: 원)

기관명	성명 (직책)	지급기간	호봉 변경 및 인건비 과다지급액					자금 원천
			당초 호봉	지급액 (A)	재획 정 호봉	지급액 (B)	인건비 과다지급액 (C=A-B)	
○○원	홍길동 (사무 국장)	소 계		85,000,000		70,000,000	15,000,000	보조 금
		2016. 7. ~ 12	13,14	35,000,000	11,12	30,000,000	5,000,000	
		2017. 1. ~ 12	14,15	50,000,000	12,13	40,000,000	10,000,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 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부, 경력증명서, 채용 서류, 급여지급내역 등

[서식 36]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건비(보조금) 과다지급 세부명세(B)

(금액단위: 원)

시설명	성명 (직책)	지급 월	당초 지급액 ¹⁾						재산정 지급액 ²⁾						과 다 지 급 액 (a-b)								
			호봉	기본 급	명 절 휴 가 비	가 족 수 당	시 간 외 수 당	특 수 근 무 수 당	중 사 자 차 우 개 선 비	사 용 자 부 담 금	소 계 (a)	호봉	기본 급	명 절 휴 가 비		가 족 수 당	시 간 외 수 당	특 수 근 무 수 당	중 사 자 차 우 개 선 비	사 용 자 부 담 금	소 계 (b)		
○○원	홍길동 (사무 국장)	'16.7.	13								11												
		'16.8.	13								11												
		'16.9.	13								11												
		'16.10.	14								12												
		'16.11.	14								12												
		'16.12.	14								12												
		소계																					
		'17.1.	14								12												
		'17.2.	14								12												
		'17.3.	14								12												
		'17.4.	14								12												
		'17.5.	14								12												
		'17.6.	14								12												
		'17.7.	14								12												
		'17.8.	14								12												
		'17.9.	14								12												
		'17.10.	15								13												
		'17.11.	15								13												
		'17.12.	15								13												
		소계																					
합계																							

주: 1) 개인별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 종류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2) 조정된 호봉에 맞게 인건비를 재산정

[서식 37]

허위 종사자 인건비 횡령 명세

(단위: 원, 개월)

연번	종사자명	총 급여액 (A)	실제 지급액 (B)	횡령금액 (C=A-B)	실제 근무기간	허위 근무기간	자금 원천
합계		111,800,000	23,000,000	86,800,000	없음		
1	홍길동	30,000,000	-	30,000,000	없음		보조금
2	홍길서	26,000,000	-	26,000,000	없음		
3	홍길남	24,000,000	10,000,000	12,000,000	5	6	
4	홍길북	28,800,000	12,000,000	16,800,000	5	7	
5	홍길가	3,000,000	1,000,000	2,000,000	1	2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부, 출근부, 경력증명서, 채용 서류, 급여지급내역 등

* 표 설명

- ○○시설 시설장 번사또는 허위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직원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빼내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서식 38]

허위 종사자 인건비(보조금) 횡령 명세

(단위: 원, 개월)

연번	허위종사자			횡령 내역		
	성명	허위 종사 기간	시설장과의 관계	횡수 (개월)	금액	자금원천
합계	4명			112	139,000,000	
1	홍길동	2007년 11월~2011년 12월	언니	50	59,000,000	보조금
2	이도령	2009년 7월~2011년 9월	동생	27	34,000,000	
3	성춘향	2009년 1월~2010년 12월	시아모부	24	31,000,000	
4	번사또	2010년 11월~2011년 10월	형부	11	15,000,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부, 경력증명서, 채용 서류, 급여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 표 설명

- ○○시설 시설장 나말고는 위 홍길동 등 4명의 허위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허위종사자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빼내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서식 39]

시설장 공공요금 사적사용 현황

(금액단위: 원)

연도	시설 전체 공공요금 (A)			사적사용 공공요금 산정액 (B)			자금 원천
	계	전기요금	수도요금	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합계	12,000,000	4,000,000	8,000,000	840,000	280,000	560,000	
2016년	3,000,000	1,000,000	2,000,000	210,000	70,000	140,000	보조금
2017년	3,000,000	1,000,000	2,000,000	210,000	70,000	140,000	
2018년	3,000,000	1,000,000	2,000,000	210,000	70,000	140,000	
2019년	3,000,000	1,000,000	2,000,000	210,000	70,000	140,000	

※ 산정방법

- ☞ 시설 전체 면적: 3,000㎡(1층 1,000㎡, 2층 1,000㎡, 3층 1,000㎡)
- ☞ 3층 사택 사용면적: 210㎡ → 전체면적의 7% (210㎡ ÷ 3,000㎡)
- ☞ 사적사용 공공요금(B): (A) × 0.7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건축물대장(평면도), 공공요금 납부 지출결의서, 사택거주 사실확인서 등

[서식 40]

직원 식대 수입 및 지출 현황(A)

(단위: 명, 원)

수납기간		식대 수입 (B)	식자재 구입 비용(C)	차액 (C=B-C)	월 수납액 (D)	월평균 식사인원 (E=B/A/D)	회계 처리
기간	개월 (A)						
합계		38,956,000	2,671,000	36,285,000			
2012년 8~12월	7	3,580,000	135,000	3,445	50,000	102	시설 회계 잡수입 처리
2013년 1~12월	12	7,050,000	300,000	6,750	50,000	11.8	
2014년 1~12월	12	6,850,000	586,000	6,264	50,000	11.4	
2015년 1~12월	12	8,026,000	1,220,000	6,806	50,000	13.4	
2016년 1~12월	12	8,950,000	385,000	8,565	50,000	14.9	
2017년 1~6월	6	4,500,000	45,000	4,455	50,000	15.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직원식대 장부, 직원식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직원식대 통장사본 등

[서식 41]

시설 생계비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 명세(B)

(단위: 명, 일, 개월 원)

수납기간		월평균 식사 인원 (B)	생계비 1식 단가 (C)	월 평균 근무일수 (D)	종사자 무상 급식액 (E=AxBxCxD)	식자재 구입 비용 (F)	보조금 환수금액 (G=E-F)	자금 원천
기간	개월 (A)							
합 계					30,798,000	2,671,000	28,127,000	
2012년 8~12월	7	10.2	1,427	20	2,038,000	135,000	1,903,000	보조금 * 전액 시도비
2013년 1~12월	12	11.8	1,687	20	4,777,000	300,000	4,477,000	
2014년 1~12월	12	11.4	1,978	20	5,412,000	586,000	4,826,000	
2015년 1~12월	12	13.4	2,141	20	6,885,000	1,220,000	5,665,000	
2016년 1~12월	12	14.9	2,172	20	7,767,000	385,000	7,382,000	
2017년 1~6월	6	15.0	2,177	20	3,919,000	45,000	3,874,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 직원식대 장부, 직원식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직원식대 통장사본 등

[서식 42]

○○시설 생계비(보조금) 목적 외 사용 명세

(단위: 원)

연도	월	일	구입품목 및 수량	거래처	지출금액	비고
합 계					6,241,910	
2013년	1	29	씨앗 100립외 20종	○○농자재마트	586,000	생계비 (보조금)
	3	14	퇴비(채소재배용)	♣♣생명기술	1,408,000	
	3	14	검투사 20ml외 11종	○○농자재마트	359,150	
	5	2	고추끈외 4종	○○농자재마트	553,300	
	6	13	하우스 채소재배용 코팅철사의 14종	○○농자재마트	542,900	
	7	9	종자용 쪽파	홍길동	240,000	
	7	30	추석배추씨외 7종	♣♣농약사	196,000	
	8	21	채소재배용 자재(지주대의 18종)	○○농자재마트	813,560	
	8	21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용 비닐구입	◎◎농협하나로마트	495,000	
	8	27	한 가을무외 4종	♣♣농약사	171,000	
	9	11	갯외 4종	♣♣농약사	110,000	
9	24	농약메리트외 1종	♣♣농약사	156,000		
11	14	채스(진딧물약)	♣♣농약사	196,000		
소계					5,826,910	
2014년	1	26	떡방앗간 유류 구입	◎◎농협주유소	323,000	생계비 (보조금)
	9	3	무우씨외 3종	○○농자재마트	92,000	
소계					415,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 등

[서식 43]

숲속시설 퇴소자 시설생계비 허위 청구 명세

(단위: 명, 원)

연도	대상자	생년월일	해당기간	퇴소상태	생계비 청구금액	자금원천
합 계	10				1,981,410	
2015년	고☆☆	0000.0.00	1.15-1.31	귀가	69,730	보조금
			2.1-2.28	귀가	123,080	
			3.1-3.1	귀가	4,100	
	김★★	0000.0.00	7.8-7.31	귀가	98,440	
			8.1-8.21	귀가	86,140	
	김◎◎	0000.0.00	7.14-7.31	귀가	73,830	
			8.1-8.15	귀가	61,530	
	이○○	0000.0.00	7.15-7.31	귀가	69,730	
			8.1-8.23	귀가	94,340	
			12.24-12.31	귀가	32,810	
	황△△	0000.0.00	7.16-7.31	귀가	65,630	
			8.1-8.23	귀가	94,340	
			12.19-12-31	귀가	53,320	
소계 (5명)					927,020	
2016년	이◇◇	0000.0.00	1.1-1.31	귀가	127,880	보조금
			2.1-2.3	귀가	12,780	
			7.20-7.31	귀가	51,140	
			8.1-8.20	귀가	85,240	
				12.27-12.31	귀가	21,310
소계 (1명)					298,350	
2017년	황△△	0000.0.00	1.1-1.31	귀가	138,300	보조금
			2.1-2.28	귀가	138,300	
			3.1-3.4	귀가	18,440	
	김▼▼	0000.0.00	1.1-1.31	귀가	138,300	
			2.1-2.10	귀가	46,100	
	김◎◎	0000.0.00	1.1-1.31	귀가	138,300	
			2.1-2.1	귀가	4,610	
	김★★	0000.0.00	1.1-1.29	귀가	133,690	
소계 (4명)					756,04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입소자 명부, 퇴소자 명부, 생계비(보조금) 신청내역 등

* 표 설명

- 숲속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을 퇴소처리 하지 않고 현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설생계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사용함

[서식 44]

후원금 전용계좌에 다른 자금 혼용 사용 명세

(단위: 원)

기관명	후원금 전용계좌 입금내역			자금원천	비고
	계좌	입금일	금액		
합 계			12,111,000	6 건	
○○복지원	농협 ☆☆☆-0000-000	2014.01.28.	500,000	보조금(사회보험)	보조금(사회보험) 등 4건의 타 자금이 후원금전용계좌에 입금되어 혼용하여 사용 중
		2014.11.30.	400,000	자부담(운영비)	
		2015.3.17.	210,000	자부담(운영비)	
		2015.3.31.	910,000	보조금(인건비)	
		소 계	2,020,000	4 건	
○○재활원	농협 ♠♠♠-0000-000	2014.3.31.	91,000	자부담(운영비)	자부담(운영비) 등 2건의 타 자금이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되어 혼용하여 사용 중
		2015.6.15.	10,000,000	보조금(인건비)	
		소 계	10,091,000	2 건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후원금 전용계좌(사본), 수입결의서 등

[서식 45]

후원금 영수증발급대장 및 회계처리 운영현황

기관명	2015년		2016년		2017년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	후원금 회계처리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	후원금 회계처리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	후원금 회계처리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미비치	부적정(①)	미비치	부적정(①)	미비치	부적정(①)
○○원	미비치	부적정(②)	미비치	부적정(②)	미비치	부적정(②)
○○요양원	미비치	적정	미비치	부적정(②)	미비치	부적정(②)
○○보호시설	미비치	적정	미비치	부적정(②)	미비치	부적정(②)
○○재활시설	미비치	적정	미비치	부적정(②)	미비치	부적정(②)

주: 법인 후원금 회계처리 부적정(①): 법인 후원금을 전출시 지급결의서 미작성
산하 시설 회계처리 부적정(②):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세입처리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후원금 영수증발급대장, 후원금 수입결의서, 후원금 지출결의서, 등

[서식 46]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현황

기관명	2017년	2018년	2019년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원	미공개	공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서식 미준수)	공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서식 미준수)
○○요양원	미공개	공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서식 미준수)	공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서식 미준수)
○○보호시설	미공개	공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서식 미준수)	공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서식 미준수)
○○재활시설	미공개	공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서식 미준수)	공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서식 미준수)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공개자료, 사실확인서 등

[서식 4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시 후원자 공개 현황

(단위: 건)

기관명	공개 유형	연도별 공개 건수			
		소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합 계	30	10	10	10
	후원자 실명	12	4	4	4
	후원 기업 및 단체 등 실명	18	6	6	6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소 계	9	3	3	3
	후원자 실명	3	1	1	1
	후원 기업 및 단체 등 실명	6	2	2	2
○○센터	소 계	21	7	7	7
	후원자 실명	9	3	3	3
	후원 기업 및 단체 등 실명	12	4	4	4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공개된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서식 48]

후원금 과다 적립 및 이월 현황

1. 정기예금 적립 규모

(금액단위: 원)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운영상태	적립금액
소계		3 건			595,400,000
1	농협	000-000-000000	○○복지원	정기예금	240,100,000
2	하나	000-000-000000	○○복지원	정기예금	200,300,000
3	국민	000-000-000000	○○복지원	정기예금	155,000,000

2. 후원금전용계좌 이월 규모

☞ 2018.00.00.(조사일 현재) 사용 중인 후원금전용계좌

(금액단위: 원)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운영상태	이월금액 ¹⁾
소계		3 건			102,300,000
1	농협	000-000-○○○○○○	○○복지원	후원금전용계좌 이월운영	35,000,000
2	농협	000-000-◆◆◆◆◆◆	○○복지원	후원금전용계좌 이월운영	47,300,000
3	국민	000-000-000000	○○복지원	후원금전용계좌 이월운영	20,000,000

주: 1) 이월금액 : 2017.12.31. 잔액을 2018.1.1.로 이월한 금액

- 위 1.항 및 2.항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후원금 정기예금통장사본, 후원금통장, 결산자료 등

[서식 49]

비지정후원금 목적 외 사용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기관명	계정과목				지출 일자	지출내역		
		관	항	목	세목		금액	적요	자금원천
합계							1,800,000		
1	○○ 마을	사무비	인건비	기타 후생경비	기타 후생경비	2015. 06.22.	300,000	상조회 지원금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2		사무비	인건비	기타 후생경비	기타 후생경비	2015. 12.09.	300,000	상조회 지원금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3		사무비	인건비	기타 후생경비	기타 후생경비	2016. 05.31.	300,000	상조회 지원금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4		사무비	인건비	기타 후생경비	기타 후생경비	2016. 12.14.	300,000	상조회 지원금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후원금 지급결의서 등

[서식 50]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업무수당(직책수당) 초과지급 명세

(단위: 건, 원)

기관명	성명 (직책)	연도	지급 월수 (A)	직책수당 월지급액 (B)	공무원 사회복지 업무수당 월지급액 ¹⁾ (C)	직책수당 월 초과 지급액 (D=B-C)	연도별 직책수당 초과지급액 (E=A×D)
○○ 복지원	계					8 건	6,400,000
	홍길동 (시설장)	2015년	4	200,000	100,000	100,000	400,000
		2016년	12	200,000	100,000	100,000	1,200,000
		2017년	12	200,000	100,000	100,000	1,200,000
		2018년	6	200,000	100,000	50,000	600,000
	홍길서 (사무국장)	2015년	12	150,000	100,000	50,000	600,000
		2016년	12	150,000	100,000	50,000	600,000
		2017년	12	150,000	100,000	50,000	600,000
		2018년	6	150,000	100,000	50,000	600,000

주: 1) 위 시설의 관할 시군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월지급액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¹⁾ 재구성

* 후원금 지급결의서, 관할 시군구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내역 등

[서식 51]

후원물품 후원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명세

(단위: 건, 대)

연번	기관명	후원일자	후원물품	후원자(단체)	후원물품관리대장 등재	
					여	부
합 계			9건 20대			9건
1	○○ 센터	2015.9.14.	TV(중고) 8대	(주)○○전기		○
2		2016.11.4.	세탁기15kg 2대	○○관리공단		○
3		2016.11.8.	세탁기15kg 2대			○
4		2017.1.6.	냉장고 3대		○	
5		2017.4.23.	드럼세탁기 1대	(주)○○시스템		○
6			전기렌지 1대			○
7		2017.10.20.	김치냉장고 1대	(주)○○테크		○
8		2018.2.26.	디오스냉장고 1대	○○엔텍		○
9			드럼세탁기 1대			○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¹⁾ 재구성

* 후원물품기탁서, 후원금품접수대장, 후원물품관리대장 등

[서식 52]

후원금 부당사용 명세

(금액단위: 원)

기관명	후원금 유형		부당하게 사용한 내용					
	지정	비지정	과 목			세부내역	지출 금액	
			관	항	목			
C 법인		○	상환금	부채상환금	이자지불금	시설 건립 당시 차입금 3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	10,000,000	
						시설 건립 당시 차입금 1억원 중 일부 상환	85,000,000	
			용도 불명			후원금 계좌에서 현금 인출, 용도 불명 사용		33,000,000
			소계					128,000,000
D 시설		○	서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법인 이사장 업무 활동비 등 지급	7,000,000	
					직책보조비	시설장 직책수당 등 지급	24,000,000	
			소계					31,000,000
E 시설	○		서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지정후원금을 시설장 직책수당 등 업무추진비로 지정 목적 외 사용	27,866,500	
					기관운영비	지정후원금(미술전시회 운영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	19,500,000	
			소계					47,366,500
F 시설		○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동생활가정 아파트 구입	66,000,000	
G 시설		○	서무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직책보조비,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	41,485,350	
H 시설	○		사무비	운영비	기타운영비	H 시설 후원금을 법인 산하 다른 시설에서 사용	43,500,000	
I 시설		○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시설 건축 차입금으로 원금상환	81,000,000	
J 법인	○					산하 시설후원금을 J 법인 운영비로 사용	32,650,000	
K 시설		○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 농사부지 등 토지 매입비로 사용	40,000,000	
합계							467,545,35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후원금 지급결의서 등

[서식 53]

입소자 입소보증금 미반환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기관명	입소자 및 입소보증금 반환사유		미반환 금액		
		성명	사유(년월일)	계	입소보증금	이자발생액
합계		5 건		25,057,400	23,320,000	1,737,400
1	∞ 복지원	홍길동	사망(2015.10.20.)	5,400,000	5,050,000	350,000
2		변사또	사망(2016.11.15.)	5,164,000	4,900,000	264,000
3		이도령	퇴소(2015.4.26.)	4,126,400	3,850,000	276,400
4		성춘향	퇴소(2017.7.9.)	5,680,000	5,200,000	480,000
5		일지매	퇴소(2015.6.12.)	4,687,000	4,320,000	367,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입소보증금 관리대장 및 통장사본, 사망자명부, 퇴소자명부 등

*** 표 설명**

- 위 입소자 5명이 사망 또는 퇴소하였음에도 입소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시설에서 보관·운용하면서 부당하게 이자수입을 취득함

[서식 54]

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 현황(A)

(단위: 건)

기관명	성명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성범죄 ①	범죄 ②	아동학대 ③	성범죄 ①	범죄 ②	아동학대 ③	성범죄 ①	범죄 ②	아동학대 ③	성범죄 ①	범죄 ②
○○마을	3명	2	2		2	1		1	1	1	1	1
	소계	4			3			3			2	
	합계	12										
○○센터	3명	1	1	1	1	2	1	1	2	2	1	2
	소계	3			4			5			3	
	합계	15										
○○의집	2명					2		1	1	1	1	1
	소계				2			3			2	
	합계	7										

주: ①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 경력조회, ② 「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조회, ③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서식 55]

시설 종사자 개인별 범죄경력 조회 실시 명세(B)

연번	성명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성범죄	범죄	아동학대	성범죄	범죄	아동학대	성범죄	범죄	아동학대	성범죄	범죄	
○ 기관명: ○○마을													
1	△△△	×	×	○	×	○	○	×	×	×	×	×	
2	△△△	○	×	○	-	-	-	-	-	-	-	-	18년입사
3	△△△	×	○	○	×	×	○	-	-	-	-	-	17년입사
소계	3명	2	2		2	1		1	1	1	1	1	
○ 기관명: ○○센터													
1	△△△	×	×	×	×	×	×	○	×	×	×	×	
2	△△△	○	○	○	-	-	-	-	-	-	-	-	18년입사
3	△△△	-	-	-	○	×	○	×	×	×	○	×	15년입사 18년퇴사
소계	3명	1	1	1	1	2	1	1	2	2	1	2	
○ 기관명: ○○의집													
1	△△△	-	-	-	○	×	○	×	×	×	×	×	18년퇴사
2	△△△	-	-	-	○	×	○	-	-	-	-	-	17년입사 18년퇴사
소계	2명					2		1	1	1	1	1	

주: (참고) 범죄경력조회: 실시 ○, 미실시 ×, 조회미대상 -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서식 56]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횡령 등 부당 사용 명세

(금액단위: 원)

연도	총징수액(A)	부당 유형							횡령의심금액 (①+②+③+④+⑤)	
		① 지출결의 누락금액(A-B)	지출결의금액 중 부당유형(B)							
		② 허위 증빙	③ 이중 청구	④ 증빙 없음	⑤ 내용 상의	⑥ 기타	⑦ 적정	소계		
합계	158,000	32,310	11,850	11,530	63,740	3,040	12,660	40,080	142,900	122,470
2015	50,000	0 ¹⁾	3,000	3,200	42,000	900	4,560	13,550	67,210	49,100
2016	53,000	17,690	4,000	4,100	9,850	1,000	3,580	12,780	35,310	36,640
2017	55,000	14,620	4,850	4,230	11,890	1,140	4,520	13,750	40,380	36,730

주: ① 지출결의서 미작성, ② 시설장 홍길동 개인카드 명세서, 홍길동²⁾ 개인 및 자녀카드 명세서, ○○○ 카드명세서, 사용자 불명 등, ③ 신용카드 운영비 통장 카드사용 명세서 첨부, ④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영수증 없음, ⑤ 지출결의서 품목과 영수증 품목 상이 등, ⑥ 교통비, 주유비, 부식 구입비 등
주: 1) 2009년의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허위증빙 등 부당유형금액을 총징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결의 하였고 때문에 지출결의 누락금액을 "0"원으로 표기함
2) 시설장 홍길동의 동생으로 시설에서 2008년 9월부터 근무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명부,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입·출금 통장 사본, 개인금전 관리 위탁서, 개인금전 지출자료, 관계자 카드명세서 등

* 표 설명

- 의집 시설장이 매월 장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금을 장애인들 모르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

[서식 57]

선급금 집행 시 증빙자료 미첨부 현황

(단위: 원)

연 도	내 역	선(先)입금액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여	부	유	무
합계		29,742,270	○			○
2017년	난방 연료대금	6,390,800	○			○
2018년		3,900,470	○			○
2019년		9,500,400	○			○
소계		19,791,670				
2017년	취사 연료대금	4,000,440	○			○
2018년		1,000,150	○			○
2019년		4,950,010	○			○
소계		9,950,6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 선(先)입금액 통장사본 등

[서식 58]

퇴소아동 개인금전(생계비) 잔액지분액 미반환 명세

(단위: 원)

아동 성명	입소일자	퇴소일자	개인금전(생계비) 사용 및 미반환 잔액			
			이월금(A)	수납액(B)	지출액(C)	잔액 (D=A+B-C)
계(2건)			4,404,000	23,409,000	25,050,100	2,762,900
●○○	2014.10.13.	2017.2.1.	1,838,000	8,809,000	9,000,100	1,646,900
⊗⊗⊗	2015.4.1.	2018.2.5.	2,566,000	14,600,000	16,050,000	1,116,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생계비통장 사본, 개인금전 지출서류 등

* 표 설명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의 개인금전인 생계비로 식비 등의 용도로 지출·관리를 하면서 매 연말 잔액이 발생한 경우 퇴소아동에게 해당하는 잔액지분을 돌려줘야 함에도 2,762,900원을 돌려주지 않음

[서식 59]

시설입소자 허위등록 및 보조금 부당수령 명세(A)

(금액단위: 원)

성명	입소일 (서류상)	보조금 지원액			
		계	평일 급식비	휴일 급식비	명절차례비
합 계		28,386,000	16,650,000	11,534,000	200,000
홍길동	2013-00-00	9,645,000	5,667,000	3,898,000	80,000
이도령	2014-00-00	6,178,000	3,647,000	2,490,000	40,000
마당쇠	2015-00-00	1,645,000	952,000	683,000	10,000
성춘향	2016-00-00	5,976,000	3,500,000	2,435,000	40,000
일지매	2017-00-00	4,942,000	2,884,000	2,028,000	30,000

주: 평일 1일 2식, 토공휴일 1일 3식, 1식 단가 2,300원 / 명절차례비 1인당 10,000원, 1년 2회(설추석)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 ○○시도 노숙인자활시설 급식비 지원기준을 토대로 허위등록자 지원 급식비 예산 재구성
입소자 명부,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등

*** 표 설명**

- 순소시설에서는 입소자 5명을 허위 등록하여 ○○시군구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8,386,000원의 보조금을 급식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음

[서식 60]

시설입소자 허위등록 및 보조금 부당수령 세부명세(B)

(단위: 일, 식, 원)

연번	성명	입소일 (서류상)	보조금 지급액									
			연도	계 (A=B+C+D)	평일 급식			휴일(토요일, 공휴일) 급식			명절 차례비 (D)	
					1식 단가	일수	식 소계 (B)	1식 단가	일수	식 소계 (C)		
1	홍길동	2013-00-00	2015년		2,300	235	2		2,300	101	3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계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서식 61]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 허위참여자 인건비 지급현황

(금액단위: 원)

기간	허위 참여자	생년월일	인건비	기간	허위 참여자	생년월일	인건비
총 계: 참여 연인원 24명, 8,944,400 (① + ②)							
2015.6월	☆☆☆	1953-00-00	334,690	2016.4월	◆◆◆	1961-00-00	358,540
2015.7월	☆☆☆	1953-00-00	334,690	2016.6월	△△△	1951-00-00	378,290
2015.8월	☆☆☆	1953-00-00	669,380	2016.7월	△△△	1951-00-00	378,290
2015.11월	○○○	1958-00-00	348,120	2016.8월	△△△	1951-00-00	378,290
2015.11월	◇◇◇	1957-00-00	334,300	2016.9월	△△△	1951-00-00	378,290
2015.12월	◆◆◆	1961-00-00	334,300	2016.9월	♠♠♠	1959-00-00	358,210
2015.12월	○○○	1958-00-00	348,120	2016.10월	△△△	1951-00-00	378,290
2015.12월	◇◇◇	1957-00-00	334,300	2016.11월	△△△	1951-00-00	378,290
2016.1월	◆◆◆	1961-00-00	358,540	2016.11월	♠♠♠	1959-00-00	358,210
2016.1월	○○○	1958-00-00	378,540	2016.12월	☆☆☆	1953-00-00	378,760
2016.1월	◇◇◇	1957-00-00	358,540	2016.12월	♠♠♠	1959-00-00	358,210
2016.2월	◆◆◆	1961-00-00	358,540	2016.12월	♣♣♣	1963-00-00	370,670
소 계: 12 명, 4,492,060 (①)				소 계: 12명, 4,452,340 (②)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입소자 명부, ○○사업 사업계획서 및 참여자 임금지급내역, 출근부, 사실조사서 등

* 표 설명

- ☒ 시설에서는 입소 허위 등록자 등을 사업참여자로 허위 등록하고, 출근부 허위 기재, 참여자의 인건비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갖춰 놓았으나, 실제로는 허위 등록된 참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사용

[서식 62]

○○원 증축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현황

(금액단위: 천원)

사업명	계약 (시공) 업체명	계약 금액 (천원)	공사 기간	준공 검사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검사 실시여부	
						실시	미실시
○○원 증축공사	○○ 건설(주)	127,170	'15.10.7.~ '15.12.5.	'15.12.6.	'15.12.6.~ '17.12.5.		○

* 주: 계약금액, 공사기간, 준공검사일은 '준공계' 자료를, 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보증서를 근거로 함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공사 계약 및 준공 관련 서류 등

[서식 63]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횡령 명세

(금액단위: 천원)

구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액				되돌려 받은 금액		
	업체명	날짜	금액	비고	날짜	금액	비고
합계			153,468			29,500	
2017년도 시설 증개축사업	A 업체	2017.2.22.	14,000	실계·감리비	2017.2.25.	5,000	계좌이체
	B 업체	2017.2.22.	25,263	CCTV 설치비	2017.2.29.	9,800	계좌이체
2016년도 정비보강 사업	C 업체	2016.8.1.	12,205	사무기기 구입비	2016.8.1.	4,000	현금
					2016.10월경	3,000	현금
2015년도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D 업체	2015.10.24.	15,000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015.12.31.	7,700	계좌이체
		2015.12.29.	36,000				
	E 업체	2015.12.24.	47,000				
	F 업체	2015.12.24.	4,000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 기능보강사업 지출결의서, 시설장 개인통장사본, 사실조사서(진술서) 등

*** 표 설명**

- ㉠㉡㉢시설에서는 기능보강사업에 참여한 관련 업체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되돌려 받아 용도불명하게 시설장 개인용으로 사용함

[서식 64]

노인급식사업비 목적 외 부당사용 명세

(단위: 개월, 일, 원)

직원명	직책	근 무 내 역			도시락 1식단가 ¹⁾	금 액	자금 원천
		기간	개월	월평균 근무일			
합 계	7 명					6,348,000	
홍길동	사무원	'15.1.1.~'9.30.	9	20	2,300	414,000	보조금
홍길서	조리원	'13.1.1.~'15.6.30.	18	20	2,300	828,000	
홍길남	사회복지사	'15.1.1.~'16.5.31.	17	20	2,300	782,000	
홍길북	사무국장	'13.1.1.~'17.2.28.	50	20	2,300	2,300,000	
이도령	사회복지사	'16.1.1.~'17.11.30.	23	20	2,300	1,058,000	
삼도령	사무원	'16.1.1.~'17.3.31.	15	20	2,300	690,000	
사도령	사무원	'17.1.1.~'12.31.	6	20	2,300	276,000	

주: 1) 2010~2015년 ○○시도 ○○사군구 노인급식사업 운영계획상 1식단가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 사업계획서, 보조금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직원 중식자 명부 등

*** 표 설명**

- ㉠㉡㉢시설에서 노인급식사업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노인과 시설 직원이 공동급식을 하면서 직원 식대를 사용하지 않고 노인급식사업 보조금으로 시설 직원 7명의 중식을 제공함

[서식 65]

시설별 주요 식자재 계약 및 거래 명세

(금액단위: 원)

기관명	연도	품명	계약방법	거래금액	계약업체
○○원	소계		6건	190,000,000	
	2015년	쌀, 잡곡 등	수익	20,000,000	○○마트
	2015년	육류	수익	30,000,000	○○정육
	2016년	유제품류	수익	40,000,000	○○우유
	2016년	야채류	수익	50,000,000	○○농원
	2017년	수산·야채류	수익	30,000,000	○○생선
	2017년	청과류	수익	20,000,000	○○청과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 기관별 계약 서류, 지출결의서 등

[서식 66]

시설 운영비 선결제 등 집행절차 부적정 명세

(단위: 천원)

지출내역			확인결과			비고	
일자	건명	거래처	결제금액(A)	실제구입액(B)	선결제액(C)		현재잔액 ¹⁾
합계		7건	6,061	3,073	2,988	1,876	
2016.10.20.	사무용품 구입	◆◆ 문구사	598	-	598	478	'15년부터 선결제
2016.10.30.	정보제공지 제작	디자인 ◎◎	220	-	220	220	현재 제작 중
2016.12.30.	취업자 간담회 식대비	♣♣ 숯불갈비	160	-	160	-	직원회식에 10만원 사용
2016.12.30.	취업자 간담회 다과비	☒☒마트	27	-	27	27	
2016.12.30.	식당운영 주부식비	●●마트	2,831	2,048	783	240	
2016.12.30.	식당운영 주부식비	◆◆ 정육점	1,625	1,025	600	464	
2016.12.30.	식당운영 주부식비	♣♣ 떡방앗간	600	-	600	447	

주: 1) 조사 당시 잔액

- 자료: 조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 지출결의서,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 표 설명

- §§시설에서는 사무용품 구입 등 명목으로 7건 6,061,000원의 운영비를 집행하였으나, 실제 물품구매 등에 사용된 금액은 3,073,000원이며, 나머지 2,988,000원은 불용으로 인한 예산 반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 등을 허위로 구입한 것으로 결제 처리를 한 후 주무관청에 결산 보고함

VII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크리스트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운영 부적정 사례를
체크리스트로 제작한 것으로,
관련 법령·지침은 물론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알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10가지 체크리스트

CHECK
01

올바른 비지정후원금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집지출, 예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는 사용하지하면 안 됩니다.

ex) 자선행사 등의 행사 수익금을 비지정후원금이 아닌 사업수익으로 처리 후 용도 외 사용(×)
회의비, 각종 경조사비, 회식비, 명절 선물구입 등(×)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후원금의 관리)

CHECK
02

사회보험료 정산 후 잔액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보조금으로 지원중인 사업주 부과금액은 주무관청에 반납하고, 종사자 개인 부과금액은 해당 종사자에게 환급되어야 합니다.

ex) 수년간 반납 및 환급되지 않아 관련 통장의 정산 잔액 과다 발생 및 일부 유용(×)

☑ 관련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자치단체보조사업), 사업별 보조금 교부조건 등

CHECK
03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은 꼭! 반납하셔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ex) 1년 미만의 종사자 퇴직금 미반납 또는 운영비 등으로 사용(×)

☑ 관련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자치단체보조사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등

CHECK
04

신규 종사자 채용 전 경력 산정에 대해 알아보까요?

▶ 신규 채용 시 채용 전 경력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0%, 유사경력 80%, 기타 군복무 및 별도 경력인정 등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경력증명서 및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등 그 세부 내용을 반드시 조회·확인하여야 합니다.

ex)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의 근무경력 100% 인정, 유사경력 80% 인정 시 동종직종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 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와 사회복지분야가 아닌 공무원 근무경력 전체 인정, 군 경력 3년 초과 인정 등(×)

☑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종사자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CHECK 05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상속인 부존재시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일정기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이해관계인에게 분여 또는 국가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 ex)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통장)을 시설에서 보관 또는 유용(×)
- ☑ 관련규정 : 민법 제1053조~제105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장제급여) 등 각 사업별 개별 지침

CHECK 06

공사 및 물품(식자재) 등 계약절차는 이렇습니다!

- ▶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의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ex) (계약방법 위배) 수의계약 규모 미준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은 2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
- (계약의 원칙 위배) 납품금액의 10% 후원 등 불공정 특약이나 조건 명시(×)
- (주·부식류 등 식자재) 연간 구매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임에도 관행적 수의계약(×)
-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등

CHECK 07

법인 및 시설의 회계는 독립하여 구분하셔야 합니다!

- ▶ 회계 구분의 원칙에 따라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법인 운영비는 법인회계에서, 시설운영비는 각각의 시설회계에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 ex) 시설에서 이사회 회의비 등 법인 운영비 지출, A시설에서 B시설의 공공요금 지출 등(×)
- ▶ 법인은 산하시설로 법인전출금 세출처리가 가능하나, 시설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만 법인회계로 전출금 세출처리가 가능하며, 시설 간 시설 전출금은 불가합니다.
- ex) 법인 산하 A시설에서 B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B시설로 직접 자금이체(×)
-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및 별표1~별표4

CHECK 08

보조금 “생계비”로 종사자·실비입소자 등이 공동급식 할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생계비로 종사자 및 실비입소자 등이 공동으로 급식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식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 ex) 종사자가 식대를 납부하지 않고 공동급식(X), 종사자 식대 대부분을 운영비로 지출(×), 실비입소자 입소비용 중 주·부식비 지출 비중이 1식 단가 기준 이한 경우 등(×)
- ☑ 관련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생계급여)

CHECK 09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 ▶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자 지위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ex) 대표이사 겸 시설장에게 후원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퇴직급여적립(×)
- ☑ 관련규정 : 법제처 및 고용부 질의회신 결과, 노인·아동·장애인 등 개별 사업지침 등

CHECK 10

시설운영비는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ex) 시설운영비로 시설장 핸드폰 요금 지출, 공용차량으로 출퇴근, 법인 건물 임의로 사적사용(×)
-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3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등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발행일 | 2020년 5월

발행 |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인쇄 | 열림기획(주)